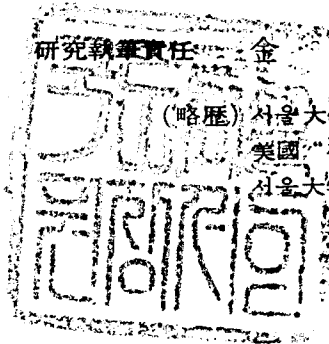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關係—國際關係

分断의 背景 및 分断固定化에 作用한 對外與件



研究執筆責任 金 學 俊

(略歷) 서울大學校 文理大 政治學科卒業 (1965)

美國 "피츠버그" 大學 大學院業 (政治學博士)

서울大學校 文理大 助教授 (1974)

刊行責任 徐 極 性 (調查研究室 研究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 | |
|-------------------------------------|----|
| 序 文 | 3 |
| 第一節 分断의 事实的 背景 | 7 |
| 1. 極東地域의 戰後處理에 對한 聯合國의 立場 | 7 |
| 2. 戰時會談에 있어서의 韓國問題 | 8 |
| 第二節 分断의 現實的 背景 | 14 |
| 1. 一般命令 第1號의 背景 | 14 |
| 2. 獨逸 및 越南分割과 의 差異 | 18 |
| 第三節 美·蘇의 分割 占領과 南北韓-政權의 胚胎 | 21 |
| 1. 蘇聯의 占領政策과 北韓「純粹型 聯立」時期 | 22 |
| 2. 美國의 占領政策과 南韓 | 29 |
| 第四節 「모스크바」三相會議와 韓國信託統治案 및 美·蘇 共同委員會 | 34 |
| 1. 「모스크바」三相會議와 韓國에 關한 合意 | 34 |
| 2. 贊託과 反託 | 36 |
| 3. 美·蘇 共同委員會와 南北韓의 政治發展 | 39 |
| 第五節 韓國問題의 U.N 移管 | 50 |
| 1. 韓國問題와 U.N의 役割 | 50 |
| 2. 「유엔」에 있어서 韓國問題의 考慮 | 52 |
| 3. UNTCOK 活動과 韓國政治指導者들의 努力 | 54 |

| | |
|---------------------------------------|----|
| 第六節 두개의 韓國의 誕生과 韓半島의 固定化..... | 58 |
| 1. 두개의 韓國의 誕生 | 58 |
| 第七節 韓國戰爭 勃發以前까지 南北韓政府의 統一努力 | 65 |
| 1. 大韓民國 政府의 統一努力..... | 67 |
| 2. 北韓의 統一政策 | 70 |
| 第八節 韓國動亂과 그 意味 | 75 |
| 1. 韓國動亂 勃發의 體制論的 分析 | 75 |
| 2. 韓國動亂의 責任 | 77 |
| 3. 韓半島의 國際責任地域化 | 79 |
| 4. 休戰以後 南北韓의 統一接近 | 81 |
| 結 論 | 83 |

序 文

흔히 韓國의 歷史는 「폴랜드」와 「벨지움」의 歷史처럼 地政學的 條件과의 函數關係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東北亞細亞의 緊要한 十字路의 中央, 즉 戰略의 三極의 心臟部를 차지하고 있는 韓半島는 오랫동안 亞細亞의 大陸勢力과 太平洋勢力 사이의 競爭의 焦點이 되어 왔다. 東南쪽으로는 120 마일의 좁은 海峽을 사이에 두고 日本이 位置하고 있고 西北쪽으로는 中國滿洲의 鴨綠江을 사이로 接境하고 있으며, 東北쪽으로는 豆滿江의 一部를 사이로 蘇聯과 連接하고 있는 韓國은 바로 그 戰略的 位置 때문에 이들 外勢와, 이들 外勢와 競爭關係에 있는 歐美勢力의 角逐場이 되어 왔다. 註 1) 따라서 韓國의 歷史는 항상 成功的인 것은 아니었지만 外勢에 對抗하여 스스로의 獨立을 維持하기 위한 民族的 鬭爭의 歷史로 點綴되어 왔다. 傳統的으로 韓民族이 스스로의 運命이 内部的 要素에 의해서가 아니라 外勢의 影響에 의해 定型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은 바로 外勢의 角逐場으로서의 韓國史가 갖는 特殊性 때문이다.

註 1) 한 著者は 韓半島를 「Nexus of East Asia」라고 表現하고 있다. David I. Steinberg, Korea : Nexus of East Asia (New York: American-Asian Educational Exchange, Inc., 1968), p.1.

韓半島가, 韓半島를 스스로의 排他的 影響下에 두거나 또는 最小 競爭勢力의 影響을 排除하려는 關聯強大國들의 利益이 相衝하는 地域이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다. 따라서 韓半島에 대한 外勢의 支配形態 (또는 影響力의 行使形態)는 대체로 強力한 一方의 排他的인 独占支配와 關係國 사이의 分割支配라는 類型을 보여 왔다. 實現된 것은 아니었지만, 日本의 豊信秀吉案과 明의 魏学会代案 (1593年), 英國의 「킴벨리」(Lord Kimberley)案(1894年), 日本의 山県有朋案(1896年), 露西亞의 로젠 (Baron Roman Romanovich Rosen)案 (1903年)들은 모두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들의 對決을 韓半島의 分割로 緩和하자는 苦肉之計로서 提議되었던 後者의 代表的인 例들이다. 註2)

1945年 8月 15日 日帝로부터의 解放의 歎息과 함께 우리 民族에게 주어진 「판도라의 箱子」에서 제일 처음 뛰어 나온 것은 分斷의 悲哀였다. 民族의 悲運인 祖國의 分斷은 우선 앞서 지적한 地政學的-歷史的 脈絡 속에서 理解될 수 있는 側面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國內外를 통한 自由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對決이

註2) 이러한 提案들을 當時의 史籍과 外交文牘의 分析을 통해 가장 權威 있게 밝힌 論文은 盧啓鉉, “韓國分割案에 관한 歷史的 考察,” 韓國外交史 研究 (서울:海文社, 1967), pp. 152-179.

라는 이데올로기의 局面이 加味되고 이것이 国内政治와 國際政治에
연결되어 分断의 固定化에 主要役割을 하게 된다는 特殊性이
있다.



第一節 分斷의 事實的 背景

1. 極東地域의 戰後處理에 대한 聯合國의 立場

우리 民族에게 베풀어진 試鍊과 苦難을 強要해 온 分斷이 애초에 어떤 經緯에 의해 무슨 目的으로 決定되었는지는 아직도 分明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韓半島의 分斷이 聯合國의 第二次世界大戰의 戰後處理過程의 한 副産物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韓半島의 分斷經緯도 二次大戰 外交史의 큰 테두리 안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二次大戰 初期의 危機는 1942年 後半에 있는 美軍의 積極적 反攻으로 好轉되어 43年初부터는 戰後의 平和 및 安全保障機構問題가 聯合國 사이에 論議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 때부터 聯合國 - 특히 美國 - 은 亞細亞에 있어서 日本의 占領下에 있던 植民地域의 戰後處理問題에 關係 留意하게 되었고 이 過程에서 韓國의 將來에 關係 考慮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美國이 極東地域의 戰後處理問題와 韓國問題를 考慮함에 있어서 대체로 다음의 要素들이 作用하였다. 첫째는 日本이 장차 膨脹政策을 再開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大幅 縮小시켜야 한다는 考慮였고, 이 考慮에서 韓國을 비롯한 日本 占領地域의 獨立을 약속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美國이 關東軍을 비롯한 日本의 戰力을 誇大評價한 나머지 蘇聯軍의 極東參戰을 積極 勸奨하였고, 이를 誘導하기 위해 戰後處理에 關係 戰時의 協商에서 蘇聯에게 不必要한

讓步를 거듭하여 韓國問題를 비롯한 極東問題에 蘇聯의 介入을 가져 왔다는 點이다. 셋째는 美國이 二次大戰中에 수립된 蘇聯과 聯合國 사이의 協調가 戰後에도 繼續되리라고 믿었고 이 잘못된 믿음 위에서 戰後處理에 관한 協定이 이루어졌다는 點이다. 마지막으로 「루즈벨트」大統領의 独自の인 個人外交와 그 影響이 「루즈벨트」와 「트르맨」大統領의 戰時會談에 있어서 國務省의 協議없이 지나치게 軍部の 助言에 依存케 했다는 點이다. 이에 따라 重要な 決定들이 長期的이기 보다는 오히려 短期的인 軍事的 目標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要素들이 複合的으로 韓國問題處理와 나아가서 韓國分斷에까지 直接的인 影響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註 3)

2. 戰時會談에 있어서 韓國問題

「잊혀진 나라」였던 韓國問題가 聯合國首腦사이에 最初로 論議된 것은 1943年 3月 「루즈벨트」美大統領과 「헐」(Cordell Hull) 美國務長官이 「이든」(Anthony Eden)英外相과 워싱턴에서 가졌던 會談에서였다.

主題는 滿洲, 台灣, 인도차이나와 韓國등의 戰後復歸에 관한 問題였

註 3) 이 點들은 다음의 著書에 철저히 분석되고 있다. Soon Sung Cho,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art 1.

다. 「루즈벨트」는 滿洲와 台灣은 中國에 返還되어야 하며, 인도
차이나와 韓國은 信託統治 (international trusteeship) 下에 놓
여져야 한다는 意見を 내놓았다.

韓國에 關해, 이들은 統治委員國으로 美國, 中國, 蘇聯을 擧名했다. 註4)
韓國託治案은 解放된 亞細亞의 植民地 人民들이 強大國의 後見
(tutelage) 아래 民主的 制度 속에 教育되어야 한다는 「루즈벨트」
의 持論을 반영한 것이었다. 註5)

이러한 予備會談이 있은 뒤 同年 11月 20日 카이로에서 「루즈
벨트」, 「처칠」, 蔣介石의 三巨頭會談이 열렸다. 이들은 「카이로
共同宣言」을 통해 日本은 1914年 以後 太平洋地域에서 탈취한
모든 島嶼들을 返還해야 하며 滿洲, 台灣, 澎湖群島를 中國에 돌려
주어야 한다고 선언했으나 韓國은 『適當한 時期』에 (in due
course)에 獨立이 許容될 것이라는 但書를 붙여 自主獨立을 잠정

註4) Anthony Eden, The Memoirs of Anthony Eden: The
Reckon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5),
p.438; Cordell Hull, Memoirs (New York: Macmillan
Co., 1948), II, p.1596.

5) Samuel Rosenman(ed.), The Public Papers and Addre-
ssee of Franklin D. Roosevelt (New York: Harper &
Bros., 1950), 1942 volume, p.476.

적으로 留保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註6) 이 留保 역시 「루즈벨트」의 韓國託治案의 反映이었다. 註7)

韓國託治案은 同年 11月 28日 테헤란에서 열린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사이의 三巨頭會談에서 再論되었다. 「루즈벨트」는 『韓國人이 완전한 獨立을 얻기 前에 약 40年間の 修習期間 (apprenticeship)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스탈린」은 이에 대한 同意를 表示했다. 註8)

註6) 美国, 英国, 中国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韓國國民의 奴隸狀態에 留意하여 適當한 時期에 韓國이 解放되고 獨立하게 될 것을 決意한다』. 카이로 宣言文의 全文은 다음에 포함되어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In Quest of Peace and Security: Selected Documents on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5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p. 10

7) 「루즈벨트」의 特別補佐官 「홉킨스」(Harry Hopkins)가 마련한 草案에는 韓國의 獨立은 『가장 早速한 時日內에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부여된다고 明記되어 있었으나 「루즈벨트」가 『適當한 時期에 at the proper moment)』로 고쳤고 文筆에 능한 「처칠」이 『in due course』로 다듬었다.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Washington, D.C.: U.S.G.P.O., 1961), pp. 398-404.

8) Robert E. Sherwood, Roosevelt and Hopkins: An Intimate History (New York: Harper & Bros., 1948), p. 777; 註7), p. 869.

이러한 對話는 1945年 2月 8日 美國, 英國, 蘇聯의 三巨頭 사이의 알타會談에서 계속되었다. 「루즈벨트」가 美·中·蘇의 代表로 구성된 韓國託治案을 제의하자, 「스탈린」은 『韓國인들이 그들자신의 充足할 만한 政府를 세울 수 있다면 왜 託治가 필요하겠느냐』고 물었다. 「루즈벨트」가 『필리핀이 自治政府를 준비하는데 약 50年이 所要』되었음을 想起하고 『韓國의 경우에는 그 期間이 20年내지 30年일 수 있다』고 대답하자, 「스탈린」은 『그 期間이 짧으면 짧을 수록 좋다』고 논평했다. 「스탈린」이 다시 外軍이 韓國에 주둔하느냐고 묻자 「루즈벨트」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며 「스탈린」도 이에 同意했다. 註9)

흔히 韓半島의 分斷이 이 알타會談에서 密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註10) 內容의 거의 全部가 발표된 會談의 公式文書에는 韓國 分斷에 관한 言及이 전혀 없다. 위에 記述한 託治案에 관한 對話가 韓國問題에 관한 言及의 全部이다. 그러나 日本이 거의 敗亡하고 있었고 原子彈製造計劃의 成功이 予告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의 재촉과 양보에 의해 蘇聯의 極東戰參加가 약속된 이 會談은 滿洲에 대한 蘇聯의 露日戰爭前의 權益을 認定함으로써 類推解狀

註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Xalta (Washington, D.C.: U.S.G.P.O., 1955), p.770; p.984.

註10) 例를 들면, New York Times, March 1, 1948; 서울新聞, 1947年 12月 25日; 林炳稷, 臨政에서 印度까지: 林炳稷外交回顧錄 (서울: 女苑社, 1964), pp.261-263.

上 韓國에 대한 蘇聯의 「歷史的 利益」을 주장할 수 있는 根據을 마련했다. 註 11)

同年 4月12日 「루즈벨트」가 死亡한 뒤 韓國託治에 관한 「알타」에서의 불확정한 諒解는 協商에 의해 어느 정도 分明해 졌다. 美.蘇는 美.蘇.英.中의 短期間の 託治가 韓國에게 獨立國家로서 最善의 出發이며 將來의 獨立을 保障할 수 있다는데 合意했다. 註 12) 그러나 託治下의 過渡政府의 性格, 韓國의 軍事占領, 韓國이 완전한 獨立을 얻을 時期등에 대해서는 論議하지 않음으로써, 뒷날 紛爭의 씨를 묻어 놓았다.

同年 7월에 있는 美.英.蘇 首腦들의 「포츠담」會談은 大戰의 마지막 聯合國會議였다. 이 首腦會談에서는 韓國問題가 전혀 論議되지 않았다. 註 13) 그러나, 7月 26日 公表된 포츠담宣言은 카이로宣言을 再確認, 韓國이 『適當한 時期에』 獨立되어야 한다는 것을 明白히 했다. 註 14)

韓國問題가 포츠담의 首腦會談에서는 論議되지 않았으나, 이 會議에 隨行한 美國과 蘇聯官史들의 軍事會談에서는 論議되었다. 이들은 蘇聯이 對日戰爭에 參加한 뒤 兩軍의 海.空作戰範圍로 日本東北部

註 11) Leland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p. 11-12.

12) 註 8), p. 903.

13) Harry S. Truman,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2 vols.: New York: Doubleday and Co., 1956), II, p. 317.

14) 포츠담宣言의 全文은 다음에 포함되어 있다.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A Decade of American Policy: Basic Documents, 1941-1949 (Washington, D.C.: U.S.G.P.O., 1950), p. 50

로 부터 韓半島北端을 연결짓는 線을 劃定했다. 그러나 陸上作戰의 限界線이나 軍事占領을 위한 地域에 關係서는 전혀 討議가 없었다. 왜냐면 美軍이나 蘇軍이 『즉각적인 將來에』 韓半島로 進攻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註 15)

그러나 이 會談도중 美國이 韓半島에 있어서 陸上分界線에 關係 생각해 본것 만큼은 확실하다. 會談도중의 어느날 陸軍參謀總長 「마셜」(George C. Marshall)大將이 陸軍作戰局長 「헐」(John E. Hull)中將에게 美軍의 韓半島進攻에 關係 준비하도록 「지시하자, 「헐」과 그의 參謀長은 『美軍과 蘇軍의 地上境界線을 劃定한 곳을 결정하기 위해 韓國地圖를 研究했다.』 아들은 『最小限 仁川港과 釜山港이 美軍地域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 서울 北方에 線을 그었는데 이것이 정확히 38度線은 아니었으나 『거의 그것에 가까웠다』 또 그것에 沿한 것이었다.』 註 16) 그러나 美.蘇代表들은 포츠담의 軍事會談에서 이 分界線을 議議하지 않았다. 결국, 聯合國들은 그들의 마지막 會談였던 포츠담會談에서조차 韓半島의 將來에 關係 아무런 明示的 設計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註 15) 註 13), p.351.

16) U.S. Department of the Army,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repared by Roy E. Applema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 U.S.G.P.O., 1961), pp.3-4 著者の 記錄은 1952年 「헐」將軍과의 會見에 根據를 두고 있다. 이와 비슷한 美國務省官史의 言及에 對해서는 Time, 1950年 7月 3日, p.15.

第二節 分斷의 現實的 背景

1. 一般命令 第一號의 背景

8月6日과 8日 美國이 広島와 長岐에 原子彈을 投下, 全市를 잿더미로 만들고 8日 蘇聯이 対日戰에 參加함으로써 戰勢는 결정적 段階에 도달했다. 蘇軍은 破竹之勢로 韓. 滿에 進入, 8日 羅津空襲에 이어 9日에는 韓半島의 最東化인 雄基를 폭격하고 곧 度興으로 進攻, 13日에는 清津에 上陸했다. 日本은 10日 降伏意 思를 표시하고 14日 無條件降伏을 발표했다.

이러한 戰局의 급작스런 進展은 美國으로 하여금 韓半島에 대한 進攻에서 軍事的 占領과 日軍의 武装解除로 戰略을 變更토록 하였다. 이 때 (8月12日) 모스크바 特使「폴리」(Edwin W. Pauley)와 모스크바 大使「해리만」(Averell Harriman) 등은 韓半島 全城과 滿洲의 工業地帶를 美軍이 占領토록 건의했으나 「트르만」 大統領은 『이 時點의 機會는 長期間의 戰爭을 끝내는 것』이라고 판단, 채택하지 않았다. 註17)

그대신 美國은 韓半島를 38度線에서 分斷하기로 결정했다. 이 作業에 직접 參加했던 國防省 一般參謀部의 大領「리스크」(Dean Rusk)는 後日 議會에서 다음과 같이 証言한 바 있다.

註17) Truman, Memoirs: Year of Decision, II, pp. 433-34.

『日本の 降伏으로, 國務省과 軍部는 「맥아더」 將軍에게 필요한 命命을 내리고 다른 聯合國 政府와 日本降伏에 대해 필요한 協議를 하기 위해 緊急會議을 가졌다. 이러한 目的으로 國務省 및 陸, 海軍合同調整委員會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는 8月 10~15 日間に 몇차례의 긴 會議을 열었다. ... 議題는 日本降伏의 受諾에 관한 協議였다. 國務省은 美軍이 가능한 한 北쪽에서 降伏받을 것을 건의 했다. 軍部는 즉시 이용할만한 美軍이 不足했고, 또한 時, 空의 條件으로 보아도 蘇軍이 이 地域에 進入하기 전에 더 北쪽으로 가기는 어려웠다.』^{註18)}

사실, 蘇軍이 이미 韓半島 東北에 進入했음에 반해, 韓國으로 이동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美軍은 600 마일 떨어진 오키나와 1,500 내지 2,000 마일 떨어진 필리핀에 있었다. 따라서, 「러스크」에 의하면,

『陸軍側은 가능한 한 北쪽에서 降伏 받기를 원하는 美國의 政治的 欲求와 美軍이 그 地域에 도달하기에는 分명한 限界를 갖고 있는 點을 調和한 提案을 요청했다. 우리는 38度線을 권고했는데……이것은 美軍의 責任地域內에 韓國首都를 포함시켜 놓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註19)}

註18)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Washington, D.C.: U.S.G.P.O., 1969) W. P. 1039

19) Ibid.

이 案은 8月13日 「트르만」에 의해 채택, 「즉시」 英, 蘇, 中 政府에 전달되었다. 어느 나라도 이를 異議없이 받아들이자 이것은 8月15日 마닐라에 있는 「맥아더」 (Douglas MacArthur) 太平洋地域聯合軍 最高司令官에게 一般命令 第一號로 전달되었다. 註20)

「맥아더」는 9月2日 日本降伏의 公式署名과 함께 이를 布告, 韓半島에 있어서 38度線 以北의 日本軍의 降伏은 蘇軍이, 以南의 日本軍의 降伏은 美軍이 接受한다고 규정했다. 分斷에 관한 明示的인 國際合意가 없었던 韓國은 이렇게 軍事的 便宜主義에 입각한 臨時措置로서 分斷되고 말았다. 註21)

註20) 註17), pp.440-445; 蘇聯政府의 立場에 대해서는 The Sovie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lin's Correspondence with Churchill, Atlee, Roosevelt and Truman: 1964-1945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58), pp.266-68.

21) 이러한 軍事的 便宜主義說은 美國政府의 公式解明과 一致하는 것이다. 「트르만」도 『38度線은 日本戰爭機構의 급작스런 崩壞가 韓國에서 真空을 만들었을 때 實際的인 解決로서 美國에 의해 提案되었다』고 회고 하고 있다. 註13), p.317. 똑같은 內容의 美國務省 說明에 대해서는 U.S. House of Representatives, 81st Congress, 1st Session Hearing on House Report No.5330, Korea Aid,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Washington, D.C.: U.S. G.P.O., 1949), pp.118-119. 國務長官의 回顧錄인 James F. Byrnes, Speaking Frankly (New York: Harper & Bros, 1947), pp.221-222. 이러한 軍事的 便宜主義에 입각한 分析은 Shannon McCune, "The Thirty-Eighth Parallel in Korea," World Politics, Vol. I, No.2 (January, 1949),

pp.223-32 와 arthur L. Grey, Jr., "The Thirty-Eighth Parallel," *Foreign Affairs*, Vol. 29, No. 3 (April, 1951), pp. 482-87 이 代表的이다. 蘇聯外交政策을 분석한 Max Beloff,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1944-95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도 이說을 주장하고 있다. 이 著書에 의하면, 『38 線을 軍事境界線으로 규정한 一般命令 第一号가 「스탈린」에게 제출되었을 때, 滿洲에 있는 日軍의 猛烈한 抵抗을 받고 있던 蘇聯은 38 線에 관한 그러한 文書에 머리를 쓸 겨를이 없었다. 『얼떨결에 日本이 降伏하고 戰鬪가 끝난 뒤에 보니까 어느새 蘇軍은 38 線 以南에 陣을 치고』 마주 보게 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同書, p.151. 이 軍事的 便宜主義說은 美國과 德國의 學界에서 일단 正統論으로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註11)의 Goodrich, pp.12-16, 註2)의 盧啓鉉; pp.169-171, 註3)의 趙淳昇 등등이다. 또 朴俊奎, "누가 38 線을 그었는가," *新東亞* (1965年 8月), pp.274-280 등도 있다. 筆者의 論理展開도 이 McCune-Grey - 趙淳昇式 解釈에 입각하고 있다.

이 說을 否認하는 代表的인 것으로 李用熙, "三八線劃定新考: 朝鮮日參戰史에 沿하여," *亞細亞學報*, 第1輯 (霞城李璣根 博士華甲紀念論叢, 1965年 12月), pp.409-464 가 있다. 이 論文이 인용하고 있는 資料도 위에 지적된 資料와 똑 같다. 다만 解釈上의 差異가 있다. 李教授는 McCune-Grey 說이 韓半島의 分斷을 『降伏問題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구상된 그 야말로 單純하고 技術的인 降伏接受線으로 說明하므로써 그 意義를 極小化하여 塗抹하려는 一傾向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개탄」하고 있다. 또 美國의 資料公開方式도 強大國의 責任을 極小化시키려는 意圖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李教授는 「루즈벨트」가 蘇聯 및 中國(蔣介石)의 韓半島에 대한 전통적인 領土的 貪慾을 看破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을 포함한 韓半島 信託統治라는 共同管理를 제안한 것으로 보며 특히 蘇聯의 위협 아래 韓半島의 半이라도 건져 보자는 속셈에서 政略的으로 38 線을 긋게 된 것 같다고 본다. 이와 비슷한 解釈은 鄭答碩, "三八線劃定과 美國의 責任," *新東亞* (1971年 8月), pp.124-137 이 있다.

2. 獨逸 및 越南分割과의 差異

二次大戰의 處理過程에서 聯合國에 의해 分割占領된 敵軍地域으로서 東에서 韓半島와 西에서 獨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強大國이었던 獨逸과 殖民地였던 韓國의 分斷經緯와 性格은 相異하다.

1945年5月8日 獨逸軍의 無條件降伏이 있기 以前에 聯合國들은 이미 그들 나름대로 獨逸을 分割함으로써 獨逸의 힘을 갈라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獨逸이 다시는 世界大戰을 挑發할 만한 힘을 기르지 못하게 하려는 底意에서 獨逸分割案이나 獨逸中立化案을 구상하고 있었다.^{註22)} 그러나 獨逸의 分割問題가 公式的으로 처음 論議된 것은 1943年 10月 19-30日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聯合國 三相會談에서였고 獨逸分割에 關係 아무런 決定이 없었으나 이 會議의 決定에 따라 「테헤란」會談이 別리게 되었고, 戰後 歐洲問題處理를 爲한 歐洲諮問委員會 (European Advisory Commission)가 구성되었다. 테헤란會談 역시 獨逸分割에 關係 구체적인 決定에 도달하지 못한 채 問題를 알타會談에 넘겼다. 여기에서 비로소 獨逸分割에 關係 原則的 合意가 이뤄지고 비록 實質的으로는 別로 큰 役割을 하지는 못했지만 獨逸分割委員會가 구성되었다.

註22) 獨逸과 越南 分斷에 關係 國內의 案内書로 金哲鎔·金芝雲, 分斷國의 問題 (서울: 三星文化財團, 1972), 三星文化文庫 20. W. Grewe, Deutsche Außenpolitik der Nachkriegszeit, Stuttgart, 1960; R. Thilenius, Die Teilung Deutschlands, Eine Zeigeschichtliche Analyse, 1957.

獨逸의 分割에 實際的 意義를 갖는 것은 前記한 歐洲諮問委員會의 作業이었다. 이 委員會는 獨逸 占領地域의 分割에 關係 協諒한 끝에 1944年 9月 12에는 獨逸 占領地帶에 關係한 認定書에 署名하였고 同年 11月 14日에는 이를 수정한 修正認定書에 署名하였으며 1945年 2月 初에는 各國의 承認을 거쳐 發効케 하였다. 그 內容은 1943年 봄에 제시된 「아틀라-計劃」(Atlas Plan)에 根據한 것으로 獨逸은 1937年 12月 31日 現在의 國境線안에서 占領目的을 위하여 世 계의 占領地域으로 分割되며 베르린市는 三國國 共同占領地區로서 특별한 地位에 놓이게 되었다. 1945年 7月 26日 프랑스가 여기에 추가됨으로써 獨逸과 베르린市는 각각 네 개의 占領地帶과 占領地區로 分割되었다. 이처럼 獨逸의 分斷은 聯合國에 의해 意圖된 것 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國際間的 明示的 合意가 儼存했던 것이다. 越南의 分斷은 기본적으로 「內爭型」分斷이란 點에서, 비록 國際間的 明示的 合意없는 非意圖的인 것이었으나 結果적으로 「國際型」分斷이었던 韓國의 分斷과 差異가 있다.註23) 1946年 12月 베트남 獨立同盟會(越盟)는 베트남에서 물러서지 않는 프랑스를 相對로 獨立戰爭 또는 民族解放戰爭을 개시했다. 이 解放戰爭은 支配者와 被支配者와의 戰爭이었으나 從에서 國家間的 戰爭아닌 內戰의 性格을

註 23) 「國際型」分斷과 「內爭型」分斷의 分類와 이에 의한 越南 分斷의 性格規定을 위해서는 洪承勉, "分斷國問題의 再發見," 東亞日報社 安保, 統一問題調査研究所編, 東西獨과 南北總: 統一方式의 類似性과 異質性(서; 1973), pp.9-36.

지낸다. 그것은 또한 베트남民主共和國과 1949年 樹立된 프랑스
의 偶인 베트남國(베트남共和國의 前身)과의 戰爭이었다는 點에서도
內戰이다.

1954年 7月의 제네바協定으로 베트남이 北緯 17度線을 基準으로
삼는 軍事分界線을 中心, 南北으로 分斷되었다고 해서 「國際型」分
斷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이 協定이 第一次 베트남獨立戰爭
의 結果였고, 會議 자체의 性格이 그 戰爭의 現實的인 戰勢를 反映
시켜 交戰當事者인 雙方이 受諾할 수 있는 休戰案을 協商하는데
있었으며 越盟代表도 베트남國 代表도 會議에 參席했다. 이처럼
越南의 分斷은 「內爭的」性格이 두텁하다.

第三節 美·蘇의 分割 占領과 南北韓의 胚胎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韓國의 獨立을 위한 聯合國 시나리오의 主題는 信託統治였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美·蘇에 의한 韓半島의 軍事占領은 四大國 信託統治에 의해 代償되고 一定한 後見의 期間이 지난 뒤 韓國은 『自由롭고 獨立된 國家』가 된다는 「해피 엔딩」이 약속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二次大戰中에 수립된 美·蘇의 協調體制가 戰後에도 持續될 것이라는 樂觀적인 假定 위에 마련된 것이었다. 註 24)

그러나 이 託治案은 곧 決定的인 障礙에 부딪혔다. 첫째, 戰後 美·蘇의 冷戰이 점점 深化, 韓半島에 있어서도 美·蘇의 協調가 거의 不可能하게 되었다. 둘째, 解放을 곧 獨立으로 期待했던 韓民族의 熱望이 託治를 民族的 恥辱으로 棄却함으로써 解放者의 設計에 正面 挑戰하였다. 여기에 이데올로기의 對立이 激化되어 分斷의 壁을 깨뜨리지 못한 채 美·蘇의 占領地域에 南北政權이 胚胎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었다.

註 24) 물론 이것이 戰時中 美國의 對蘇警戒心을 過小評價하는 것은 아니다. 美國의 對蘇 警戒心은 특히 포츠담會談을 앞두고 美陸軍省이 작성한 각종 狀況判斷書에 散見된다.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of Berlin (Potsdam Conference) 1945 (2 vols: Washington, D. C.: U. S. G. P. O., 1960).

다음에서 모스크바 三相會議가 韓國의 信託統治案을 결정할 때까지 南北韓의 政治發展을 美·蘇의 占領政策과 關聯지어 考察하기로 한다. 이 期間에 蘇聯은 北韓에서 「革命的 民主基地」의 建設을 當面目標로 삼고 北韓單獨政權의 胎兒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데 반해 美國은 처음 日本의 旧支配機構 마저도 存続시키려 했을 정도로 微溫政策을 취하여 韓民族의 하나의 樞力中央 (Power center) 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1. 蘇聯의 占領政策과 北韓 - 「純粹型 聯立」時期

戰後 共產主義者들의 執權은 대개 다음 세가지 通路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루어졌다. 民族主義勢力의 성공적인 계급라運動, 大衆의 支持와 選舉를 통한 議會進出, 蘇軍에 의한 소비에트政權의 露骨的인 創出이 그 通路들이다.^{註 25)} 이들 가운데 세번째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Baggage-train government 즉 「소비에트 軍隊의 政治보따리의 하나로서 다른 나라로 운반된 政府形態」, 또는 「소비에트」 軍隊가 輜重車에 싣고 軍用行幸에 넣어진 體制」

註 25) R.V.Burks, "Eastern Europe," in C.E.Black and T. P.Thornton (eds.), Communism and Revolution(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p:86-93.

로 불리었다. 註 26) 北韓政權은 기본적으로 이 「baggage-train government」였던 것이다. 註 27)

蘇聯軍 第 25 軍 (司令官 = Ivan M. Chistiakov) 이 1945 年 8 月 24 日 平壤에 入城했을 때, 이 뒤에는 러시아화한 韓人과 金日成一派로 구성된 약 300 名의 訓練된 政治·行政要員들이 뒤따랐다. 註 28) 이들이 - 특히 43 人組 - 「로마병코」少將의 政治司令部에 소속, 謀策의 힘을 背景으로 北韓의 소비에트화에 앞장 서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金日成은 1946 年 2 月 8 日 『조선군대가 북조선에 진주하자 인민

註 26) Frederick C. Barghoorn 의 이 表現은 Carl Beck, "Career Characteristics of East European Leadership," in R. Barry Farrell (ed.), *Political Leadership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0), pp. 157-194 에 散見된다.

27) 北韓政權의 baggage-train government 的 性格은 권위있는 다음의 著述들에 잘 나타나고 있다.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 (2 vols., 서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I;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 (서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64) 第一章;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Washington, D. C.: U.S.G.P.O., 1961); Dae Sook Suh, "A Preconceived Formula for Sovietization: The Communist Takeover of North Korea,"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1 (April, 1973), pp. 101-114; J.W. Washburn, "Russia Looks at Northern Korea," *Pacific Affairs*, XX, No. 2 (June, 1947); W.B. Dubin, "The Political Evolution of the Pyongyang government," *Pacific Affairs*, XXIII, No. 4 (December, 1950), pp. 339-55.

註 28)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pp. 15-17.

들은……인민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註29)}

그러나 蔭西가 進駐하기에 앞서 北韓의 右翼民族主義勢力은 특히 「韓國의 간디」로 불리운 曹晩植의 領導아래 平安兩道建國準備委員會를 구성했으며 日本으로 부터 政權을 移讓받아 北韓의 實質的 權力, 中央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었다.玄俊憲같은 共產主義者도 『朝鮮에 있어서 現段階의 課題는 부르조아 民主革命』이라고 주장, 曹晩植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었다.^{註30)} 따라서 國內에 勢力의 基盤이 없이 導入된 33세 젊은 金日成과 그 一派는 蘇聯軍隊의 힘만으로 처음부터 執權할 수 없었다.^{註31)}

註29) 김일성선집, I, 1963年版, p.43. 傍点是 筆者.

30) 오늘날 北韓의 公式刊行에서는 平兩建準에 관한 記錄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생생한 實話는 당시 이에 관계했던 吳泳鎮의 하나의 証言(서울, 1953), 第2章(平壤의 主人)에서 읽을 수 있다.

31) 金日成의 1930年代「抗日武裝闘争」의 過去와 특히 그가 1941年 日軍에 쫓겨 시베리아로 간 뒤 다시 北韓에 나타날 때까지의 活動에 대해서는 아직 精確한 記錄이 없다. 北韓의 公式刊行物들(예컨대 Baik Bong, Kim Il Sung, Biography (3 vols.; Tokyo: Miraisha), I, 도 이 後者에 대해 沈黙하고 있다. 韓載德등은 金이 시베리아로 쫓겨간 뒤 하바로브스크 부근에서 훈련을 받고 치스차코브將軍 麾下하에서 스탈린그라드戰鬪에 參戰했고 蔭軍 少佐階級章을 달고 入北했다고 주장한다. 韓載德, 金日成을 告發한다(서울: 内外問題研究所, 1965)와 韓國의 共產主義와 北韓의 歷史(서울: 内外問題研究所, 1965) 및 Ryu Hun, Study of North Korea (Seoul: Research Institute of

Baggage-train government가 國內의 民族主義勢力을 除去하고 소비에트體制를 確立할 때까지 대개 세가지 經路를 밟게 된다는 것이 東歐를 관찰한 學者들의 일반적인 見解이다. 첫째가 國內民族主義勢力과의 「純粹型 聯立」(genuine coalition) 段階, 둘째가 民族勢力을 除去한 뒤 親共勢力 및 中間派와 제휴하나 實權은 共産黨이 장악하는 「似而非型 聯立」(bogus coalition) 段階, 셋째가 共産黨의 「單一柱的 政權(Monolithic regime) 樹立」의

註31 계속)

International and External Affairs, 1966), P. 152.

1944年11月の 日本情報로는 金이 브라디보스토크 근처의 Okeanskaya Field School에서 훈련을 받았고 모스크바를 두 차례 往復하면서 滿洲에 있어서 聯合國의 努力을 調整하는데 一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Kin Nichi-sei No katsudo jokyo," Tokko gaiji geppo, November, 1944, pp.76-78.

註27)의 Dae Sook Suh의 論文, p.104에서 再引用.

金日成에 관한 研究로는 Chong-sik Lee, "Kim Il-song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VII, No.6 (June, 1967), pp.374-82;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256-86.

여기 하나. 재미 있는 것은 北韓도 初期에는 또 하나의 金日成이 있음을 是認했다는 点이다. 1948年4月21日의 平壤放送을 보면 南北會談때 「金日成將軍」이 아닌 또 하나의 「老人 金日成」을 소개하고 그로 하여금 「金日成將軍」을 찬양하는 演說을 하게 하고 있다. F.B.I.S., Daily Report, April 23, 1948, KOREA.

段階이다. 註 32) 北韓도 1948년까지 대체로 이 段階들을 밟게 되는데, 모스크바 三相會議을 前後한 時期까지가 바로 이 部分에서 검토되는 「純粹型 聯立」의 段階이다. (北韓의 경우 차라리 「半純粹型 聯立」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第一段階에서 蘇聯軍의 北韓占領政策의 目標을 밝히기 위해 8 月末에서 10 月中旬까지 발표된 蘇聯軍司令部의 公式宣言文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蘇聯軍司令部는 北韓에 進駐하면서 곧 두개의 聲明을 발표했다. 『朝鮮人民들에게』 보낸 「치스차코브」 司令官의 聲明과 『붉은 軍隊는 무슨 目的으로 朝鮮에 왔는가』라는 揭示文은 모두 蘇聯軍이 『朝鮮에 소비에트秩序를 設定하거나 또는 朝鮮地域을 얻으려는 그런 目的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적다. 당신들(筆註: 朝鮮사람들)에게 달렸다』고 격려했다. 註 33) 이 主題는 10 月 12 日 발표된 『北朝鮮駐屯 蘇聯 25 軍司令部 聲明書』에 좀더 구체적으로 반복되어 있다. 註 34)

그러나 蘇聯軍司令部 政治指導員 「크로찰」의 「人民政府樹立要綱」(9 月 14 日), 共產黨平南地區擴大委員會가 採択한 綱領 「政治路線에 關하여」(9 月 15 日), 蘇聯軍司令部의 7 개항 聲明(9 月 27 日)

註 32) H. Seton-Watso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New York, 1961), pp. 169-171); 같은 著者の From Lenin to Malenkov: the History of World Communism (New York: Praeger, 1955), pp. 248-249.

33) 첫 번째 文件은 北韓의 朝鮮中央年鑑, 1949, p. 57; 두 번째 文件은 金昌順, 北韓十五年史 (서울: 知文閣, 1961), p. 47에 있다.

34) 北韓의 朝鮮中央年鑑, 1949, p. 58.

등은 玄俊繼式의 「부르조와 民主革命」路線을 비판하고, 親日勢力을 철저히 배제한 民族統一戰線을 結成해서 프 로레타리아革命의 基本條件을 준비하는 것이 占領下의 當 面政策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註35)

이처럼 北韓에 대한 占領政策의 目標을 분명히 밝히면서 蘇聯軍 司令部는 民族主義勢力의 集結體인 曹晩植의 建準을 해체시키고 共 産主義者와 非共産主義者가 半半씩 참가하는 새로운 人民政治委員會 를 구성했다. 이 方式으로 10月8日 五道臨時人民委員會를 구성 하고 10月28日 이를 五道行政局으로 개편했다. 曹晩植을 首班으 로 한 이 五道行政局은 共産主義者와 非共産主義者의 聯立形式을 취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北韓의 「胎兒的 政府」(embryonic government)였다. 여러 學者들이 이 五道行政局의 창설을 『北 韓의 單獨政權 樹立을 향한 第一歩』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註36)

이와 비슷한 時期에 蘇聯軍司令部는 北韓의 소비에트화를 추진할

註35) 「政治路線에 關하여」와 玄에 대한 批判은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II(The Society), p.322를 참조. 그밖은 朝鮮解 放一年史(서울, 1948), p.118과 Kin Shyo-mei, Chosen Shinminshushugi Kakumeishi(Tokyo:Gogatsu Shoho, 1953) p.164.

36) 註35)의 Scalapino와 Lee의 共著, II, p.332-333. 이들은 10月中旬에 蘇聯의 北韓占領政策에 定型되었다고 본다.

政治道具인 「마르크스-레닌主義的 革命政黨」을 발족시켰다. 10月 10日 「朝鮮共產黨西北五道責任者 및 熱誠者大會」에 이어 10月 13日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이 세워졌다.³⁷⁾ 金日成은 이때에도 責任있는 자리에 앉지 않았으나 오늘날 朝鮮勞動黨이 그 創黨日字를 10月10日로 定하고 記念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때에 벌써 金의 主導權은 確固했음을 意味한다.^{註 38)}

이처럼 行政府와 共產黨의 權成을 끝낸 뒤 蘇聯軍司令部는 10月 14日 金日成을 환영하는 「平壤市群衆大會」를 열고 33세의 젊은 이를 「民族의 英雄」으로 稱呼시켰다.^{註 39)} 그리고 韓國共產主義運動의 革命的 傳統을 소위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에서 부터 수립하기 위해 「抗日遊擊隊」의 傳說을 誇張내지 創하기 시작했다.

金日成이 최소한 北韓에 單獨政權을 수립하겠다는 決意는 그가

註 37) 註 31)의 韓載德, 金日成을 告發한다, p. 136.

오늘날 北韓의 모든 刊行物에서는 「北朝鮮分局」이란 文句는 말소되고 그대신 「朝鮮共產黨 北朝鮮組織委員會」로 기록되어 있고 조직일자도 10月10日로 되어 있다. 예컨대 註 31)의 Baik Bong의 金日成傳記, II, p. 42는 1945年 10月10日 北朝鮮共產黨 中央組織委員會가 결성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朝鮮中央年鑑, 1949, p. 715는 10月13日에 北朝鮮分局이 설치되었다고 쓰고 있다.

38) 이 解釈은 註 27)의 梁好民, p. 87.

39) 註 35)의 Scalapino and Lee의 共著, II,의 面報에 金日成을 환영하기 위한 群衆大會의 寫眞이 있다. 이 寫眞을 보면 마이크 앞에서 있는 金의 뒤에 數名의 蘇聯軍將校들이 서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의 刊行物에 나오는 바로 이 寫眞에는 蘇聯軍人들을 지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責任秘書로 선출된 45年12月17日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 第三次擴大執行委員會」에서 행한 黨路線과 組織에 관한 報告演說에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北韓에 바로 共產基地를 뜻하는 소위 「民主基地」를 창설할 것을 宣稱한 것이다. 註 40).

共產主義者들에 대항한 非共產主義者들의 朝鮮民主黨은 曹晩植을 黨首로 11月3日 創建되었다. 그러나 曹晩植이 모스크바 三相會議(1945年12月)에서 결정된 信託統治를 支持하지 않는다는 理由에서 「反動」으로 急變하여 註 41) 軟禁되고 黨이 共產主義者 崔庸健에게 넘어가면서 北韓에 있어서 「半純粹型 聯立」의 段階는 終末을 告하고 말았다.

2. 美國의 占領政策과 南韓

蘇聯이 北韓에서 共產單獨政權樹立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음에 반해 南韓에 대한 美國의 占領政策은 日本總督府의 諸機關과 協力하여 現狀을 維持하면서 蘇聯과 韓國託治案을 協商한다는 姑息의인 것이었다.

韓國에 대한 美國의 初期占領政策은 駐韓美軍政司官 「하지」(John R. Hodge)의 布告文(9月2日), 「맥아더」司官의 布告文(9月8日), 美軍政長官 「아놀드」少將의 聲明書(10月10日),

註 40) 김일성선집, I, 1963年度版, 평양, pp.26-27.

41) 上掲書, pp.37-38.

및 國務・陸・海軍省調整委員會의 「初期基本指示」(10月13日作成) 10月17日 「맥아더」에게 發送)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進駐에 앞서 空中撤布된 「하지」의 布告는 『民衆에 대한 布告 및 諸命令이 現存하는 諸官庁을 통하여 布告한다』고 밝히, 日本總督府의 諸機關과의 協調를 示唆했다.^{註 42)} 九月八日 美軍의 서울進駐와 함께 공포된 「맥아더」布告 第一号 역시 兩韓에 軍政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는 동시에 「政府公共團體에 從事하는者」, 즉 日帝의 行政機關員의 繼續職務를 명령했다.^{註 43)} 이렇듯 美軍은 日帝의 韓國統治機構를 合法的 統治機構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三・一運動 이래 亡命政府의 役割을 수행해온 大韓民國臨時政府나 또는 美軍進駐 이를 전에 左翼勢力이 建國準備委員會를 變造한 「朝鮮人民共和國」도 인정하지 않았다.^{註 44)}

이러한 美國의 占領政策은 韓民族의 政治的 리더십을 弱화, 分裂시키는 結果를 가져 왔다. 民族의 求心點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臨政의 李承晩, 金九, 金奎植 등은 個人資格으로 귀국할 수

註 42) 孫世一, “韓國分斷의 背景과 特性,” 東亞日報社安保統一調查研究所編, 東西獨과 南北韓, pp.357-358 에서 再引用.

43) 上掲書, pp.358-359 에서 再引用.

44) 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No.1 (Sept., 1945), p.177. 以下 Summation 이라 略함: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hukan Digest [Weekly Digest], No.2 (Oct., 25, 1945).

밖에 없었고 解放後 감정적 結集勢力이었던 建準黨도 弱化되었으며 이 틈을 이용, 建準과 敵對關係에 있고 附日要素가 포함되어 있다고 指彈되던 韓民黨이 美軍政과 提携하게 되었다.

美國의 初期占領政策의 구체적 性格은 앞에서 지적한 三省調整委의 初期基本指示에 集約되어 있다. 『聯合國의 信託統治가 성립될 때까지의 初期占領期間, 韓國의 民政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政策을 규정하기 위한』 이 指示는 美軍政의 當面課題로 日本의 降伏條件이 韓國에서 엄격히 이행되게 할 것과 在韓日本軍의 降伏의 接受등을 지적하면서 憲政機關에 가급적 韓人을 이용할 것이나 필요한 경우 日人이나 附日韓人을 어용해도 좋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韓國軍占領政策에 대해서는 美國의 對韓政策의 窮極的目的은 國際聯合의 責任있는 成員으로서 충분히 自由롭고 獨立된 國家를 건설하기 위한 條件을 助長함에 있다고 밝히고 現地로 레벨에서 蘇聯과의 交渉에 필요한 措施를 취할 것, 但 그 경우 留意할 것은 美, 蘇의 過渡的 初期占領에서 四大國에 의한 信託統治期에의 移行에 도움이 되는 條件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註45)

註45) 註18).

이처럼 日本의 降伏條項의 履行이라는 軍事의 目的 이외에는 분명한 政策이 없고 더구나 日人과 附日韓人의 起用이라는 現狀維持 政策은 폭발적인 政治的 熱狂속의 韓國政治를 오직 加熱할 뿐이었다. 또한 美軍政의 「政治的 中立主義」는 南勞黨을 중심한 左翼 勢力의 猛烈한 活動을 可能케 했고, 한편 民族障當은 美軍政에 積極 參與하고 있던 韓民黨勢力과 10월에 귀국한 李承晚, 11월에 귀국한 金九 등 臨政勢力사이의 左右合作問題, 對美軍政府 協調問題, 附日協力者 處理問題등에 대해 異見을 드러내어, 政局은 混亂을 거듭했다.

이사이 38度線은 점점 分斷線으로 固定되어 갔다. 6月末에서 9月初 사이 蘇聯軍은 南韓과의 鐵道, 電信, 電話, 郵便交流를 일체 斷絶시킨 바 있었다. 註 46) 「初期基本指示」에 입각하여 「하지」는 38度線의 壁을 열고 南北交流를 위하여 北韓의 蘇聯軍司令部와 對담하려고 여러번 試函했으나 蘇聯軍側은 이를 制限 밖이라고 반

註 46) 이 問題는 당시 朝鮮總督府의 行政官吏, 鐵道關係者들의 証 據를 수록한 森田芳夫의 朝鮮終戰의 記錄에 잘 나와 있다. 曹圭河 李庚文 姜声才, 南北의 對話(서울:한일문화, 1972), pp.70-71에서 再引用

번히 거절했다. 그리하여 「하지」는 11月下旬 38度線의 취소를
포함한 韓國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美國이 「國際의 水準의 積極的인
行動」을 취하도록 合同參謀部에 建議하기에 이르렀다. 註47)

註47) 註13).

第四節 모스크바 三相會議과

韓國信託統治案 및 美·蘇共同委員會

1. 모스크바 三相會議과 韓國에 관한 合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韓半島에 있어서 美·蘇의 初期占領政策에 따른 分斷의 固定化 現狀을 타결하기 위해서도 美國은 戰時的 國際會議에서 명확히 해놓지 않았던 韓國信託統治問題에 대해 蘇聯과 매듭을 짓지 않을 수 없는 段階에 이르렀다. 12月16日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린 美·英·蘇 三國의 外相會議는 戰後 世界問題와 함께 韓國에 대한 聯合國의 信託統治의 구체적 實施方案을 다루게 되었다.

外相會議의 첫날 會議에서 「獨立韓國政府의 수립을 위한 韓國統一行政의 창설」이 議題로 채택되었다. 12月17日 美國務長官「번즈」(James F. Byrnes)는 「韓國의 統一行政」(Unified Administration for Korea)이라는 覺書를 통해 우선 韓國에 統一行政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 統一行政은 交易, 交通, 電氣通信, 配電, 石炭運送, 難民問題 등 韓國의 國家利益에 관한 일체의 懸案問題를 共同處決하는 두 司會官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될수록 韓人을 行政官 또는 兩司會官의 顧問으로 起用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四大國의 信託統治가 「하나의 獨立韓國」을 낳을 가장 가능성 있는 機構를 준비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러므로 四大國이 가능한 한 빨리 信託統治協定 아래의 하나의 統一行政을 설치하기 위한 討議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協定の試案으로 美·英·中·蘇가 施政權자가 되며 託治期間은 5年으로 하고 一次에 한해 延長할 수 있으나 5年이상은 안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註 48)

蘇聯外相 몰로토프(V.M. Molotov)의 提案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過渡的 臨時政府의 樹立에 관한 共同委員會의 創設과 5年의 託治期間을 骨子로 하고 있다. 註 49) 이 兩案이 踰越되어 12月 27日 발표된 韓國問題에 관한 「모스크바 協定」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韓國民主臨時政府를 수립한다.

(ii) 韓國民主臨時政府의 수립을 위해 美·蘇占領軍司令部의 代表들로 구성되는 共同委員會를 설치한다. 이 委員會는 韓國의 「民主的」諸政黨 및 社會團體와 協의한다.

(iii) 韓國民主臨時政府와 韓國의 民主的 諸團體의 參加아래 韓國人民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進歩와 民主的 自治의 發展 및 韓國의 國家的 獨立의 달성을 協力, 援助하는 方法을 작성하는 것도 共同委의 課題이다.

(iv) 美·蘇占領軍司令部의 代表로 구성되는 會議을 2週안에 개최한다. 註 50)

註 48) 註 21)의 Byrnes의 回顧錄, p.111 및 註 13)의 p.319.

49) 上掲 Byrnes, p.222

50) U.S. Department of State, Moscow Meeting of Foreign Ministers: December 16-26, 1945 (Washington, D.C.: U.S. G.P.O., 1946), pp. 14-16.

蘇聯立場을 위해서는 The Sovie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Soviet Union and the Korean Question (London, 1950).

이러한 內容의 모스크바協定은 처음부터 實現可能性이 희박했다. 이 時점에 이미 美·蘇 兩國間에 主로 東歐問題를 둘러싸고 不和가 高潮되고 있었다. 더구나 信託統治에 대한 韓國民衆 특히 美國의 支持勢力인 右翼障營의 격렬한 反對는 美國으로 하여금 카이로 宣言이래의 對韓政策이었던 託治案의 拋棄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한편 蘇聯은 이미 구축되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의 「民主基地」를 土臺로 臨時政府의 樹立過程을 통해 蘇聯支持勢力의 地位를 확보하기 위해 北韓에 있어서의 일체의 反託運動을 억압하고 南北韓의 共產黨을 중심으로한 左翼勢力으로 하여금 贊託運動을 전개, 모스크바 協定の 이행을 促求한다는 態度를 취했다. 註 51)

2. 贊託과 反託

韓國問題에 관한 모스크바 協定の 뉴스가 國內에 알려진 것은 12月 28日이었다. 『꿈에도 所願인』獨立政府의 樹立을 贊成해온 韓民族에게 5年間の 託治協定은 「하나의 侮辱」이며 크나큰 衝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反託運動은 大國主義에 대한 「새로운 獨立運動」(金九의 말)의 覺悟로 전국적으로 전개 되었다.

左翼障營의 경우, 모스크바 協定이 전해진 그날 밤으로 金九의 主導 아래 조직된 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反託의 意思自体는 變함이 없었다. 그러나 朴憲永의 平壤訪問

註 51) 註 42), p.371.

을 契機로 左翼陣營은 贊託으로 急變, 信託統治問題는 民主主義的 民族統一戰線의 結成을 통해 「解決」할 것을 주장했다. 46年1月 3日 左翼陣營 주최의 大衆集會에서 그들은 「信託統治」라는 用語 대신에 北韓當局이 공식 발표한 「後見制」라는 用語를 쓰면서 民衆을 說得하려고 하였다. 註 52)

信託統治에 대한 反應은 北韓에서도 마찬가지로 였다. 曹晩植을 중심 심으로한 朝民黨의 主導로 広範한 反託運動이 전개되고 共產主義者들도 反託의 뜻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모스크바로부터 『三 相 會議決定은 蘇聯이 앞장서서 만든 것이므로 共產黨은 絶對支持하라』 는 指示가 있자 共產主義者들은 贊託으로 나서게 되었다. 註 53) 그 리하여 46年1月2日에는 共產主義政黨, 社會團體連名의 모스크바決定 支持共同聲明書, 3日에는 北朝鮮行政局長會議聲明書등이 잇따랐는데 이 文件들은 한결같이 臨時政府樹立의 意義를 강조하고 信託統治는 「後見制」라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反託運動은 금지되고 曹晩植은

註 52) (i)左右派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Summation, No. 4 (Jan., 1946) pp. 281-283.

(ii)南韓共產系 政黨의 聲明은 New York Times, January 11, 1946 參照.

(iii)共產黨은 모스크바 協定에서 규정한 信託統治를 露語의 Opeka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英語의 guardianship 또는 trusteeship과 같다고 한다. 美.蘇간에 논의된 信託統治의 概念에는 international trusteeship과 tutelage가 있었는데 露語의 Opeka는 tutelage (後見制)의 뜻을 갖는다고 한다. 註 42), ff. 26, pp. 394.

53) 註 46), 第五章.

軟禁되었다. 蘇聯은 그들의 占領地域 안의 일체의 反託勢力을 去勢하여 北韓의 政黨, 社會團體들을 모스크바 協定 支持로 統一시키고 南韓의 左翼陣營도 贊託케 하여 美, 蘇共委에 임하려 했던 것이다. 註 54) 따라서 信託統治問題를 契機로 北韓에서는 民族障當이 越南이나 露清으로 급격히 몰락하게 되어 「半純粹型 聯立」이 깨어지게 되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南韓에서도 右翼은 反託으로 左翼은 贊託으로 일치하게 되어 兩大勢力이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46年 韓國의 政治史는 反託과 贊託을 둘러싼 一代의 大政治論戰과 生死를 건 血戰 같은 左右의 鬭爭으로 特徵지워진다.

右翼勢力은 2月1日 「저명한 民衆指導者」 8名(李承晚 金九, 金奎植 樞東鎭 吳世昌 金昌淑 曹晚植 洪命蘇)을 포함한 政黨, 社會團體, 海外僑民團體 代表들로 非常國民會議을 열고 이 자리에서 『韓國의 自主的 民主主義過渡政權樹立과 기타 긴급한 諸問題의 해결에 관하여 關係列國과 協議하며 필요한 諸措置를 行할』 契機로서 最高政務委員會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美, 蘇共委가 목적으로 하는 臨時政府의 母體가 될 수 있는 民族指導者의 集結體의 組織을 추진한 美軍政의 意思가 李承晚을 통해 作用하여 「自主的인 過渡政府의 樹立」이라는 애초의 목적에서 「美軍司令官의 過渡政府 樹立努力에 諮問」하는 機關으로서 2月14日 南朝鮮-大韓國

註 54) Ibid.

民代表民主議員으로 발족했다.^{註 55)} 이에 대하여 左翼勢力들은 朝鮮共產黨과 呂運亨의 朝鮮人民黨을 중심으로 2月15日 이른바 民主主義民族戰線(民戰)을 결성했다.⁵⁶⁾

3. 美·蘇共同委員會와 南北韓의 政治發展

(가) 予備會談

모스크바 協定에 대한 左右의 치열한 對決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美·蘇兩軍代表會談가 1月16日부터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兩側의 意見差異는 會談의 첫머리부터 드러났다. 美軍代表(A.V. Arnold)는 38度線과 南北韓의 조속한 行政的 統合을 다룰 것을 제의한데 대해 蘇聯代表(Terenti Shtykov)는 南北間의 物物交換과 鐵道 및 道路再開등 제한된 問題만을 다룰 것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會談는 進行되어 결국 2月5日 한달이내에 美·蘇共委를 연다는 것과 郵便物의 交換, 라디오 周派數의 割當, 38度線往來, 北韓으로부터의 送電의 계속과 같은 제한된 事項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졌다.^{註 57)} 그러나 이들 事項들도 뒤에 시행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

註 55) 韓太壽, 韓國政党史(서울:新太陽社, 1961), p.72.

56) Summation, Sept. 1945-Feb. 1946, p. 282.

57) U.S. Department of State, Korea's Independence(Washington, D.C.:U.S.G.P.O., 1947), pp.3-4.

(4) 第一次共委

予備會談의 合意에 따라 46年3月20日부터 第一次 美·蘇共同委員會가 서울에서 열렸다. 會議 첫날 蘇聯代表 「스티코프」는 『朝鮮에는 民主主義制度를 건립하려는 努力을 방해하려는 反動的 反民主的 党派와 一部分子의 猛烈한 反抗으로 초래된 중대한 難關이 있다. 앞으로 수립될 民主臨時政府는 모스크바 三相會議의 決定을 지지하는 民主的 諸政黨 社會團體를 망라한 大衆團結의 土臺 위에 창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蘇聯의 目的은 『朝鮮이 蘇聯에 대한 攻堅基地로 되지 않는 友好的 民主國家가 되게 함에 있다』고 선언, 共委가 목적으로 하는 臨時政府의 設立에 反託勢力의 參加를 排除할 뜻을 명백히 했다.^{註 58)} 여기에 대해 美國代表는 『表現의 自由는 절대적이어야 하며……美國代表團이 의도하는 바는 비록 아무리 잘 조직되어 있고 아무리 정력적으로 政治活動을 할지라도 少數派에 의한 韓國支配를 저지함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것은 反託 右翼陣營에게도 臨時政府 樹立에의 發言權이 주어져야 하며 共產黨의 韓國支配는 방지되어야 한다는 美國側의 態度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立場의 對立아래 共委는 進行되었다. 그러나

註 58) D.G.Tewksbury (comp.), Source Materials on Korean Politics and Ideologies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0), p.78.

共委에 참가할 韓國의 政黨 및 社會團體 代表의 資格問題는 끝내
 會談을 暗礁에 부딪게 하였다. 또한 美國은 臨時政府의 樹立에
 앞서 兩地域의 行政과 經濟의 統合을 제안, 現實的인 接近法을 취
 한데 반해 蘇聯은 臨時政府의 樹立이 最優先의 課題이며 經濟와
 行政의 統一은 그 뒤의 일이라는 政治優先的인 接近法을 취하였
 다. 註 59) 결국 會談은 半歩도 進전하지 못한 채 5月8日 無期休
 會로 들어가고 말았다. 註 60)

(다) 兩北韓에서의 狀況

美. 蘇共委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도 北韓에서는 소비에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갔다. 託治問題를 契機로 民族勢力이 몰락,
 「半純粹型 聯立」이 깨어졌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 時期에는 共產黨의 그의 「民主的」 「進歩的」 友黨인 天道教育
 友黨, 新民黨, 朝民黨 (曹晚植의 軟禁後 共產主義者들에 장악되었다)
 과 四黨共存의 形式을 갖춘 「似而非型 聯立」이 이뤄졌다.

註 59) 註 57), pp. 3-5;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Summation of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
 ties in Korea, Aug., 1946, p. 101; May, 1946, p. 17.

60) 한 著書는 이 5月8日이 美. 蘇占領軍의 關係에 있어서
 결정적 分水嶺이었다고 주장하고 이 理由로 이날짜 이후
 兩側의 關係가 급격히 惡化한 것을 들고 있다. George
 M. McCune and Arthur grey, Jr., Korea Toda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 72.

이 「似而非型 聯立」의 基礎 위에 46年2月8日 「北韓朝鮮民主政黨 社會團體 五道行政局 人民政治委員會 擴大會議」가 平壤에서 소집되었다. 이 會議에서 金日成은 『蘇聯의 主要한 努力으로』 이 會議가 열리게 되었음을 치하한 다음 北韓에 있어서 『中央政治機構의 결여가 北朝鮮의 政治 經濟 文化의 計劃되고 통일된 發展에 대한 主要한 障礙』라고 지적하고 『祖國의 統一까지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의 構成이 緊要하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날로 발족된 이 機關은 金의 演說속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때까지 臨時行政機關이던 道單位의 人民委員會와는 달리 統一的 中央施政機關, 즉 北韓의 单独政權의 性格을 강하게 갖고 있다. 註61)

臨時人民委員會는 발족과 동시에 土地改革의 實施를 포함한 10個綱領, 3月23日에는 이를 확대한 20個政綱등 北韓을 「民主基地」로 건설한 것을 표방한 基本政策을 발표했다. 이 綱領에 따라 3月에는 土地改革法令, 6月에는 選舉法令 및 勞動法令, 7月에는 男女平等權에 관한 法令, 8月에는 產業 交通 運輸 通信 銀行 등의 國有化에 관한 法令이 발표, 실시되었다. 註62)

이와 병행하여 「民主基地」政策을 수행하기 위한 大衆的 基盤의 強化를 目的으로 7月22日에는 이른바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

註61) 註35), pp.340-341에서 再引用.

62) 여기에 열거된 各 綱領 및 法令은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F.B.I.S.), Daily Report, 1947年2月에서 8月사이 North Korea에서 뽑은 것임.

이 결성되고 이 기초위에서 8月30日에는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과 新民黨이 合黨하여 北朝鮮 勞動黨을 결성되었다. 이것은 黨體制에 있어서도 共產黨의 「서울 中央」理論이 배격되고 北韓 單獨의 共產黨이 결성된 것을 意味한다. (註 63)

美·蘇共同委의 결렬과 北韓의 政治發展은 美國으로 하여금 兩韓에 어떤 形態의 韓國人의 代表機關을 설치할 計劃을 추진하게 했다. 共委가 결렬된 뒤인 5月24日 美軍政庁은 國務長官에게 『蘇聯은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의 統一戰線政策과 약간 다를 뿐인 政策을 韓國에서 強行할 危險임이 너무나 뚜렷하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政策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분명히 韓半島全域에 대한 蘇聯의 支配를 促進시키고 용이하게 만드는 結果가 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단일 共產黨과의 合作 없이도 諸愛國政策의 만족스러운 統合이 달성될 수 있다면 「하지」는 모스크바 協定에 의한 統一된 臨時政府의 樹立이전에 자기의 權限아래 法令을 제정할 韓國의 行政不參의인 內閣과 立法機關을 창설할 計劃임을 밝혔다. (註 64)

註 63) 특히 共產黨과 新民黨과의 合黨에 관해서는 1946年 6月 29日의 金料奉演說參照. Dae-sook Suh,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p. 495-96.

64)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Vol. VIII (Washington, D.C.: U.S. G.P.O., 1971).

46年5月25日 民主議院의 金奎植과 民戰의 呂運亨 사이에 시작된 左右合作運動은 美軍政의 이러한 政策에 의한 것이었고 李承晩이 6月3日 『兩韓만이라도 臨時政府 또는 委員會 같은 것을 조직하자』고 주장한 이른바 井邑發言도 美軍政의 政策과 無關하다고 보기 어렵다.

美軍政이 지지했던 左右合作運動은 결국 信託統治와 土地改革 問題 때문에 共產黨과 李承晩, 金九등의 極右勢力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中間勢力의 統合으로 그쳤다. 그러나 美軍政은 이를 根柢로 46年12月12日 兩朝鮮過渡立法議院을 발족시키고 47年6月3日 스스로를 兩朝鮮過渡政府로 改稱했다. 註65)

이에 자극된 李承晩은 46年12月 渡美, 『深聯이 全韓國을 위한 自由政府의 樹立에 同意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이상 兩韓에 만이라도 单独政府를 세워줄 것』을 호소했다. 註66) 같은 時期에 金九는 다시금 反託運動을 벌여 각처에서 左右衝突이 벌어졌고 47年初에는 重慶臨時政府의 主權宣言이 云謂되는 등 混亂이 거듭되었다. 註67) 이 混亂에 부채질을 가한 것이 兩韓의 共產勢力이었다. 46年

註65) Summation, No.13(Oct., 1946), pp.13-18; 李承晩의 井邑發言은 New York Times, June 9, 1946.

66)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 1954), pp.228-232.

67) Summation, No.16(Jan., 1947), pp.22-23; No.18(Mar., 1947), pp.14-16.

5月の精版社 偽幣事件을契機로 美軍政이 共産党에 대해 강경한 態度를 취하자 共産党은 蘇聯軍当局의 指示에 따라, 지금까지 이른바 國際民主主義路線에 입각해서 美軍을 解放軍으로 규정하고 合法運動을 표방해 왔던 方針을 바꾸어 「美帝打倒」를 내걸고 暴力鬪爭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南韓의 左翼三党(朝鮮共産党, 朝鮮人民党, 南朝鮮新民党)의 合党을 추진, 46年 11月 23日 南朝鮮 勞動党이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註 68)

이와 동시에 北韓에서는 11月 3日 道市郡人民委員會의 選舉가 실시되고 이어 47年 2月에는 面里(洞) 人民委員會의 選舉를 실시했다. 이어 2月 17日에는 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를 열어 最高立法機關으로 北朝鮮人民會議을 설치키로 결의했고 21日에 소집된 同會議에 의해 「臨時」를 없앤 北朝鮮人民委員會가 行政各都處를 갖추고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조직되었다. 註 69)

(라) 第二次共委

南北에 있어서 相異한 政治發展은 「하지」로 하여금 47年 2月 國務省에 『韓國의 統一을 위해 美·蘇政府가 즉각적인 措施를 취하지 않는 한 韓國은 內亂에 빠질지 모른다』는 報告를 하

註 68) Summation, No. 13 (Oct., 1946), p. 23; No. 14 (Nov., 1946), p. 24; 註 60), pp. 76-88.

69) 1947年 2月 19日의 平壤放送은 이 北韓人民委員會가 北韓에 있어서 「人民政府의 最高機關」이라고 말하고 있다. F. B. I. S., Daily Report, Feb. 21, 25, 1947, KOREA.

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國務省은 蘇聯外務省과 接促, 第二次 共
共委가 47年 5月 21日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註70)

第二次 共委에서 쌍방은 一次共委를 결렬시켰던 「共委와 協議한
民主的 政黨 및 社會團體」에 관한 問題에 대해 同意를 보았다.
즉 「民主的」 政黨 및 社會團體는 共委와의 協議에 참가하기 위
해 모스크바 協定을 지지하거나 또 그에 협력한다는 宣稱書에 署
名捺印하고 參加에 관한 請願書를 6月 23日까지 서울 또는 평양에
제출하며, 이러한 手續을 완료한 政黨 및 社會團體는 臨時政府의
憲章과 政綱에 관한 答申案을 작성하여 7月 1日까지 제출한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共委가 막상 協議對象名簿作成問題를 본격적으로 토
의하기 시작하자 다시금 쌍방의 異見이 表面化하여 一次共委때와 똑
같은 論爭을 되풀이 하게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二次共委도 雙
方間에 責任転嫁와 反論의 일방적인 聲明이 되풀이 되면서 8月 12
日 끝장이 나고 말았다. 註71)

交渉은 다시 政府間交渉으로 옮겨져 8月 29日 美國務長官代理 「로
베트」 (Robert A. Lovett)는 9月 8日에 워싱턴에서 四大國會議
를 열 것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國聯監視하의 南北韓의 人口
比例에 의한 總選舉」案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로토프」가 9月

註70)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pril 20, 1947,
p. 716.

71) 註57), pp. 35-55.

4日 이 提案을 거부하자 美國은 결국 9月17日 韓國問題를 유엔
엔에 上程시켰다. 註72)

(나) 評 価

美·蘇共同委員會의 失敗는, 共委가 처음부터 不可能한 것을
달성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못된다. 兩側의 目的
은 正反對되는 것이었다. 「볼」(W. Macmahon Ball)이: 정확히
지적인 바와 같이, 『美國은 蘇聯에 우호적일 政府의 樹立을 기어
코 봉쇄하려 했고, 蘇聯 역시 美國에 우호적일 政府의 樹立을 철
저히 저지하려한데서 결렬이 온 것』 註73) 이었다.

더구나 國際情勢와 韓國의 内部情勢가 모두 共委에 不利하게 작
용했다. 우선 國內情勢를 살펴보면, 第二次共委가 열렸을 무렵 南
北韓에는 이미 政治 經濟 社會制度에 있어서 異質인 分離發展이
추구되어 왔고, 이것은 「民主基地化作業」을 加速화한 北韓의 경
우 더욱 현저했다. 이러한 異質인 分離發展은 南北韓에 別個
의 既得權(Vested interest)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弱화내지 讓步시키는 일체의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음에 國際情勢를 살펴보면, 이 時點에 이미 戰後에 시작된 美
蘇의 冷戰이 體制化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第二次共委가

註72) Ibid., p. 56;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Sept.
28, 1947, p. 623.

73) W. Mamahon Ball,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East
Asia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56) p. 54.

열리기 두달 전인 1947年 봄 美國의 外交政策에는 결정적인 變化가 일어났다. 東歐의 소비에트化를 포함한 「스탈린」의 膨脹政策이 露骨化하자 美國은 드디어 對蘇協調政策을 버리고 「케난」(George Kennan)의 封鎖政策을 채택, 西歐에 대한 經濟支援 防衛條約 同盟體制를 發展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變化는 47年 3月 12日 「트르멘」독트린의 劇적인 宣言 속에 具體化 되었다. 美國 外交史에 있어서 『革命的인 糊期的 事件』으로 불리운 이 독트린은 美國이 蘇聯의 膨脹政策을 저지하겠다는 決意의 명백한 表明이었다. 註 74) 이에 이어 6月 5日 「마셜」(George G. Marshall) 國務長官의 유럽復興計劃이 뒤따랐다. 註 75) 蘇聯은 이러한 美國의 새로운 政策을 共產膨脹主義의 障礙로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중대한 危殆으로 간주했다. 여기에 「스탈린」은 9月末과 10月初 사이에 바르샤바에서 코민포름(Cominform)을 創設, 西歐의 團結에 대항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있는 蘇聯共産黨 政治局員 「즈다노프」(Andrei Zhdanov)의 演說 註 76) - 이른바 「즈다노프」

註 74) William G. Carleton, The Revolution in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Random House, 1957), p. 53.

75) Harry B. Price, The Marshall Plan and Its Mean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5).

76) 「즈다노프」의 演說全文은, Andrei Zhdanov, The International Situation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47)

路線 - 은 『西歐에 대한 영원한 冷戰을 선언한 것』이었다. 註 77)

이러한 狀況에서 韓國의 託治委員國으로 지명되었던 英國과 中國이 韓國에 있어서 美·蘇간의 対決을 緩和토록 居中調停할 수가 없었다. 「堅執한 兩極化体制」(tight bipolarity)에서 그들은 有効한 均衡者(effective balancer)로서의 役割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註 77) 引用文은 Zhdanov의 것이 아니고 Rubinstein의 것이다. Alvin Z. Rubinstein(ed), The Foreign Policy of the Soviet Union, 2nd ed. (New York: Random House, 1968), p. 217.

本稿는 冷戰의 起源에 관한 分析을 試圖하지 않는다. Zhdanov路線에 대한 이론바 修正主義學派의 解釋의 한 例는 John Gittings, "The great asian Conspiracy," in Edward Friedman & Mark Selden (eds.), America's Asia: Dissenting Essays on Asian-American Relations (New York: Vintage, 1971), pp. 111-115.

第五節 韓國問題의 U. N 移管

1. 韓國問題와 U. N 의 役割

韓國問題에 관한 모스크바 協定이 美·蘇共委를 통해 체결될 수 없음을 깨달은 美國은 결국 47年9月17日 「韓國의 獨立問題」를 國際聯合會에 移管키로 決定, 第三次 유엔總會에 議題로 제출했다. 註78) 이것은 美國이 카이로 宣言 이래 추구해온 對韓政策(四大國 託治案)의 全面拋棄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美國이 이처럼 韓國問題를 유엔總會에 附議한 理由는 蘇聯과의 不和라는 결정적인 要因이외에 美國의 國內事情이었다. 軍部는 韓國의 戰略的 價値를 低評價, 駐屯軍의 撤收를 要求하고 있었고, 議會는 對韓經濟援助를 거절하였으며, 韓國의 獨立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國內외의 攻擊은 漸增하고 있었고 게다가 南韓指導者들마저 美軍政의 對韓政策에 노골적인 不滿을 나타내고 있었다. 註79) 이에 47年 여름과 가을 韓國問題에 대한 美國의 考慮는 韓國의 獨立을 위한 노력한다는 名分은 세우면서 韓國 問題로 부터 빠져 나오려는 인종의 脫身策—즉 脫韓政策—에 있었다. 여기에서 美國의 「機械的 多數」가 확보되어 있는 유엔이야말로 美國의 苦悶을 가장 명백하게

註78) 「마샬」 國務長官의 提案演說은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Sept. 28, 1947, P. 620

註79) pp. 26-28

해결해 줄 수 있는 通路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韓國의 「統一」政府 樹立에 대한 유엔의 役割이란 問題점이 많았다. 왜냐하면 韓國問題의 根本적인 原因이며 基本條件이라고도 할 수 있는 兩極的 對立狀態에서의 유엔의 役割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制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호프만」(Stanley Hoffmann)이 지적한것 처럼, 國際機構란 必要할 때는 非効率적이고 有力할 때는 必要없다고 할 수 있다면, 註80) 韓國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엔의 能力이 制限되어 있음을 意味한다. 바꿔 말하면, 韓國問題의 原因이 되고 있는 兩超強大國간의 對立은 韓國의 「統一」된 政府를 樹立하는데 있어서 유엔의 役割에 상당한 制約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韓國問題의 유엔移管에 대한 蘇聯의 反對는 予想된 것이었다. 유엔移管이란 것은 결국 韓國問題에 대한 國際的 關聯의 擴散을 意味했고, 특히 美國의 「機械的 多數」가 확보되어 있는 유엔에서 「永遠한 少數」일 수 밖에 없는 蘇聯의 獨立은 처음부터 自明했기 때문이다.

註 80) Stanley Hoffmann, *Organizations Internationales et Pouvoirs Politiques des Etats* (Paris : Armand Colin 1954), p.142, Kyung-won Kim, "Korea,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XIII, No. 4 (Dec., 1970), p.433에서 再引用

2. 유엔에 있어서 韓國問題의 考慮

유엔을 통한 韓國의 統一政府의 樹立이 거의 어렵다는 予測은 유엔의 韓國問題 討議過程에서 하나의 現實로 나타났다. 우선 蘇聯은 韓國問題의 유엔移管이 모스크바 協定에 위반된다고 지적, 유엔議題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註81) 그러나 유엔 一般委員會는 12對2의 表決로, 總會는 41對6 (棄權 7)의 表決로 韓國問題를 유엔 政治委員會에 回附했다. 註82)

유엔 政治委員會는 47年 10月 28日 韓國問題를 다루기 시작했다. 여기서도 美, 蘇는 날카롭게 맞섰다. 美國은 先政府樹立, 後外軍撤收를 주장했으나 蘇聯은 先外軍撤收, 後政府樹立을 내세웠다. 蘇聯은 또 유엔討議에 대한 南北韓 代表들의 同時招請을 우선적으로 내세웠고, 여기에 대해 美國은 南北韓 代表의 選出을 위한 유엔 韓國臨時委員團의 設置를 요구했다. 註83) 政治委는 10月 30日 蘇聯의 提議를 35對6 (棄權 10)으로 否決시키고 美國의 提議를 41對0 (棄權 7)으로 可決시켰다. 이 美國案은 修正을 거쳐 47年 11月 14日 總會에서 43對9 (棄權 6)로 可決되었다. 註84) 결과적으로 大韓民國의 誕生을 가져온 이 유엔 韓國臨時委員團設置와 總選舉에 관한 決議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註81) U.N. Document, A/C.I/195 and 218

註82) U.N. Official Document, Verbatim Record, Second Session, 1947, the Plenary Meetings, Vol 1, p.299

註83) U.N. Document, A/C. I/229

註84) U.N. Official Record, Second Sessi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11), pp.16-18

『韓國問題는 근본적으로 韓國國民 自體의 問題이며 그 自由와 獨立에 關連된 問題』이므로 이 問題는 그 地域住民의 代表의 參 席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A) (i) 選舉에 의해 選출된 韓國 國民의 代表들을 本問題審議에 참여토록 초청하며 (ii) 公正한 選舉를 감시할 目的으로 韓國全域을 통하여 旅行 監視 協議할 權限이 부 여되는 9 個國 (濠洲, 카나다, 中國, 엘살바들, 프랑스, 印度, 필립핀,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으로 구성된 유엔 韓國臨時委員團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을 설치하고 (B) (i) 1948年 3月 31日 以前에 韓國에서 同委員團의 監視下에 人口比例에 따라 普通選舉原則과 秘密投票에 의한 總選舉를 실시하 며 (ii) 選舉後 가급적 빨리 國會를 구성, 政府를 수립하며 (iii) 政 府는 南北韓의 軍政當局으로 부터 政府의 諸機能을 이양받고 (iv) 自 體의 國防軍을 조직하며 (v)가급적 빨리 가능하면 90日 以內에 占 領軍이 철수토록 조치한다. 註 85)

이 決議는 蘇聯의 協調없이는 그 目的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결 정적 弱點을 갖고 있었다. 결국 「人口比例에 의한 總選舉」가 南韓 民族障壁의 勝利를 意味하며 이것은 蘇聯에 대해 非友好的인 政府의 樹立을 誘導할 것이라는 計算은 蘇聯으로 하여금 이 案에 대한 反對를 명백히 하게 하였다. 따라서 남은 代案은 이 案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또는 南韓에 만이라도 적용하는 두 가지로 줄어

註 85) Ibid

들었는데 後述하는 바와 같이 유엔은 後者를 挾한다.

3. UNTCOK의 活動과 韓國 政治指導者들의 努力

48年1月初부터 서울에서 活動을 개시한 臨時委員團은 곧 北韓에 대해서는 蘇聯軍의 入北拒否로 원래의 機能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註 86) 이에 따라 臨時委員團은 유엔總회의 臨時委員會에 行動方向에 관해 諮問을 구하게 되었다.

臨時委員會는 2月19日 이 問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美國은 南韓에서만이라도 選舉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캐나다와 호주등은 이것이 韓國의 分斷을 永久化한다는 理由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註 87) 그러나 2月26日 美國의 決議案이 31對2(棄權11)로 可決 되었고 이에 따라 臨時委員團은 48年5月10日 以內에 南韓에서 總選舉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註 88)

이 즈음에 北韓은 이미 앞서 지적한 소비에트化的 第三段階인 共産党的 「單一柱的 政權의 出現」段階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 段階는 48年2月8日 北韓의 正規軍인 人民軍의 創設과 北韓勞動黨 第二次 人民會議의 召集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서 (이미 조직된 北韓人民委員會와 함께) 共産党的 單独政權的 獨裁體制는 확립되고, 「政府」樹立은 오직 公式宣布와 儀式節次만 남게 되었던

註 86) U.N.Document, A/575, add I, p.8

註 87) U.N.Document, A/AC. 18/SR.9

註 88) U.N.Document, A/AC. 19/48.

것이다. 이러한 時点에서 北韓이 臨時委員團의 入北을 거절하고 南韓에서의 總選을 비난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못된다. 註 89)

南韓에서는 政治指導者들 사이에 南韓 總選을 놓고 다시 한번 날카로운 對立이 일어났다. 46年 6月의 井邑發言 이후 單選單政을 주장해온 李承晚과 그의 獨立促成國民會議派는 南韓에서의 강력한 政府가 北韓의 軍事力에 대한 安全瓣으로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北韓住民의 35%가 越南해운 만큼 南韓에서의 政府가 全國의 政府로서의 正統性을 갖는다고 主張하였다. 註 90) 그러나 金九와 金奎植은 臨時委員團에 의한 單選이 韓半島의 分斷을 永久化한다고 주장, 이를 배격하면서 2月과 3月に 걸쳐 北韓의 共產指導者들에게 「統一民主政府의 樹立을 위한 諸般措施」를 토의하기 위해 南韓의 政治指導者會議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註 91)

北韓當局은 兩金의 提議를 받아들여 「南北代表者連席會議」를 4月 14日 平壤에서 열도록 제의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이會議

註 89) F.B.I.S., Daily Report, Nov. 21, 1947 ; Jan. 12, 1948, North Korea

註 90) (i)한 Source는 1945年 10月에서 1948年 4月 사이에 약 80萬名이 越南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Philip Rudolph Nor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9), p. 17 그러나 美國務省은 이 비슷한 時期에 약 200萬名이 越南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Study

(ii) 李承晚의 發言에 대해서는 USAFIK,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Dec, 1947, p. 161

註 91) Ibid, march, 1948, p. 153

를 개최하는 動機는 北韓의 統一戰線政策과 관련,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애초부터 統一戰線政策에 입각, 右翼 民族主義勢力과 聯立을 형성하여 그들의 體制와 黨의 大衆性 및 合法性을 얻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信託統治를 둘러싼 共產主義者들과 民族障當간의 分裂로 統一戰線의 슬로진 効果가 크게 減小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反共的 立場으로 定評있는, 南韓의 著名한 指導者들과 平壤에서 連席會議을 갖는다는 것은 共產主義者들에게 그들의 主張이 「全朝鮮 人民」의 전폭적인 支持를 받고 있다는 主張을 할 수 있는 「黃金의 機會」를 제공한 것이다. 北韓政權이 이 連席會議을 스스로의 合法性 構築에 이용했음은 물론이다. 註 92)

그러나 4月 19日 개막된 이 會議은 共產主義國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저히 統制된 會議로서 共產主義者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끌어졌고 南韓代表들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結婚式에 참석한 손님격이 되어 진정한 南北代表者간의 連席會議로서의 性格을 상실했다. 註 93) 4月 30日 일방적으로 채택된 共同聲明은 「統一의 유일한 障礙」로서 美軍駐屯을 지적하고, 外軍撤收→全朝鮮人民의 政治

註 92) 1948年 7月 9日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連席會議에는 左翼, 中間派 및 多數 右翼政黨과 社會 團體들의 代表들이 참석했다. 南北連席會談은 全体朝鮮人民의 意思를 대표하여 南朝鮮의 單獨選舉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金日成선집, II, 1963年版, pp.243-244

註 93) 이 會議에 참석했던 南韓代表들의 証言은 註 46), 第七章에 잘 要約되어 있다.

會議→臨時政府樹立→總選實施→制憲議會構成→統一政府樹立이라는 圖式
을 제시하고 있다. 註94) 이것은 北韓立場의 精確한 複写版이었으며
外軍撤収後. 正規 人民軍을 이미 창設한 北韓과 소규모의 警備隊
만 유지하고 있는 南韓사이의 予見되는 對決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소할 것이냐의 중대한 問題에 대한 解答을 結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會談의 實踐價值를 零化한 것은, 이 時点
에서 韓國 問題는 이미 기본적으로 國際問題化하여 美·蘇의 直接
的 合意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따라서 韓國人 스스로가 취 할
수 있는 行動半徑이 극히 制限되어 있었다는 点이었다. 註95)

註94) F.B.I.S., Daily Report, May 3, 1948, North Korea.

註95) (i)한 學者는 이 會談가 權力을 장악한 共產主義者와 失權
中인 私的 個人 및 團體와의 會談라는 点에 着眼, 後者
의 失敗를 論하고 있다. Chong-sik Lee, "Negotiat-
ions Among Private Groups,"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XIII, No.4(Dec., 1970), pp 379-392.

(ii)南北會談의 進行狀況 및 決定專項에 대한 平壤側 放送은
F.B.I.S., Daily Report, April 19, 23, 1948, KOREA

第六節 두개의 韓國의 誕生과 韓半島分斷의 固定化

1. 두개의 韓國의 誕生

南北指導者 連席會議가 끝난지 열흘 뒤인 5月10日 南韓에서는 유엔 韓國臨時 委員團의 監視아래 制憲議會를 구성하기 위한 總選舉가 실시되었다. 이 韓國史 최초의 選舉에서 7,840,871名의 등록된 有權者 가운데 7,487,649名 즉 全体 登錄有權者의 95.5% (또는 全体 有權者의 75%)가 投票에 참가, 198名의 國會議員을 선출했다. 註96)

制憲國會는 5月31日 최초로 召集, 李承晩을 議長으로 선출하고 7月12日 憲法을 制定(17日 公布됨)한 뒤 新政府 初代大統領으로 李承晩을 선출했다. 李承晩이 8月初까지 組閣을 완료하자 8月12日 美國政府는 新政府가 『1947年11月14日 유엔總會決議에 의해 구상된 韓國의 政府로 간주된다』는 公式聲明을 발표, 新政府를 승인했다. 註97) 8月15日 大韓民國의 樹立이 宣布되고 「하지」는 이 날자로 美軍政이 폐지된다고 聲明했다. 註98)

註96) U.N. Document, A/AC.19/80, p.12

註97) U.N.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ug. 22, 1948, p.242, 美國이 韓國政府를 公式承認한 것은 49年1月11日이다.

註98) 大韓民國政府에 대한 美軍政當局의 權限移讓은 1948年9月11日 韓·美間의 財政 및 財産에 관한 最初協定의 체결에 의해 完結되었다.

이어 大韓民國 國會는 9月12日 장차 유엔 監視下에 大韓民國 國會로 選출될 北韓地域의 代表를 爲해 國會에 100席을 留保시킴으로써 大韓民國 政府의 全韓的 代表性을 賦與하였다. 註 99)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자 유엔 韓國臨時 委員會은 10月8日 總會에 제출할 最終報告書を 채택하였다. 이 報告書는 大韓民國이 國民이 選출한 代表에 의해 成립되었으며 同政府의 機能은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엔 全加盟國의 독특한 協調 아래 韓國의 獨立과 統一을 달성할 수 있는 方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註 100)

1948年 파리에서 개최된 第三次 유엔 總會는 韓國臨時委員會의 前記 報告書를 상정, 논의하였다. 美國의 主導아래 總會는 12월 12일 48對6 (案權1)의 圧倒的 多數로 韓國政府에 正統性을 賦與하는 決議文을 채택했다. 이 決議文은 『臨時委員會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韓國人의 大部分 (Great majority) 이 살고 있는 韓國의 한 部分 (the part) 위에 有效한 統治와 管轄權을 갖는 合法的 政府가 수립되었다』고 지적하고 이 政府는 『韓國의 그 部分의 有權者의 自由로운 意思의 有效한 (Valid)

註 99)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Washington, D.C.: U.S.G.P.O., 1960), p. 12

註 100)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8 - 49, p. 116

表現이었던 選舉에 基礎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決議文은 그 다음 이것이 『韓國에 있는 唯一한 그러한 政府이다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강조했다. 要約하면 이 決議文은 大韓民國이 韓半島 全域에 걸친 全國의 政府라고 선언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피했으나 그렇지 않다고 특별히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유엔總회의 決議가, 특히 이러한 國際的 뒷 받침이 전혀 없었던 北韓政權에 비해, 大韓民國 政府에게 韓民族의 正統性을 賦与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註 101)

北韓共產主義者들이 46-47년에 南韓에 앞서 单独政權의 性格을 갖는 政治体制을 段階的으로 構築해 왔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다음에서 北韓政權 樹立過程의 마지막 段階를 살펴 보기로 하자.

47年 11月 18日 北朝鮮人民會議 第三次 會議는 臨時憲法制定委員會를 構成한 바 있다. 憲法草案의 完成이 報告된 것은 48年 2月 6日 北朝鮮人民會議 第四次會議에서 었으며 草案은 4月 28日에 소집된 人民會議 特別會議에서 통과되고 이어서 7月 10日 人民會議 第5次會議는 同憲法을 北韓에 실시한다고 決議했다.

註 101) (i) 決議案에 대해서는 U.N. Document, A/806 參照

(ii) 大韓民國政府의 正當性과 北韓政權의 正當性의 欠如를 國際法的으로 解訖한 論文은 Hyong Kon Han, "Legal Problems of the Korean War,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 4, Vol. 3-4 (Oct., 1973), pp. 67-72

이에 따라 北朝鮮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8月25日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北韓當局에 의하면 南韓의 有權者總數 8,681,746名中 77.5%에 해당하는 6,762,407名이 「秘密地下投票」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 結果 1,080名의 代表者가 선출되었으며 그중 1,002名이 38度線 接境 以北都市인 海州에 모여 8月21日부터 26日까지 「南朝鮮人民代表者大會」를 열고 南韓을 대표하는 最高 人民會議 代議員 360名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註102) 그러나 이 海州會議을 뒷받침해 줄 이른바 南韓에서의 「地下投票」가 共產主義者들의 주장처럼 南韓에서 실시되었다고는 전혀 믿을 수 없고, 특히 「南韓投票者」 8,681,745名이란 數는 南韓政府의 적극적인 캠페인에 의해 실시되었던 5.10總選의 投票者보다 65万余名이 넘는 「영터러」 註103) 였던 것이다. 한편 北韓에서는 8月25日 代議員選舉가 실시되었다. 北韓當局에 의하면, 登錄된 有權者 總數 4,526,065名中 99.97%에 이르는 4,525,932名이 投票에 참가했는데 白函投票(民選추천 立候補支持) 數는 4,456,621名, 즉 總

註102) (1) F.B.I.S., Daily Report, Aug. 23, 24, 26, 31, 1948, KOREA
(2) 北韓憲法の 制定過程에서 이미 1948年7월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名稱이 나온다. 48年7月10日의 平壤放送參照. F.B.I.S., Daily Report, July 13, 1948.

註103) 註60), pp.246-247

投票者數의 98.49%에 해당된다고 했다. 註 104)

이 같은 「南北總選舉」를 거쳐 성립되었다는 最高人民會議은 9月 3日 北韓 憲法을 공식으로 採択하고 9日 金日成을 首相으로 하는 「朝鮮 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의 樹立을 宣布했다. 10月 12日 蘇聯은 이 「政府」를 承認했다.

이처럼 南北韓에 사실상 두개의 실질적 政府가 수립됨으로써, 軍事的 便宜主義에 입각했던 韓國의 分斷은 固定化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누가 韓國의 分斷과 그 固定化에 責任이 있는가?

이 質問에 대한 解答은 앞의 여러 部分에서 주어진 바 있으나 여기서 重復의 危險性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註 105)

우선 聯合國의 責任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43年 12月 카이로 宣言이후 적절한 時期에 韓國을 獨立시킬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軍事的 占領과 獨立, 특히 그들이 原則적으로 同意했던 信託統治에 관해 거의 아무런 準備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특히 美國의 責任이 크게 浮刻된다. 美國은 韓國託治案의 提案國이었으면서도 일련의 戰時 聯合國會議에서 이 問題에 관한

註 104) 註 102)

註 105) Soon Sung Cho, "United States Policy toward Korean Reunification during the Truman Administration,"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XIII, No 4 (Dec., 1970), pp. 79-90

구체적 合意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가 스스로가 불러들인 蘇軍의 韓半島 進入을 보고서야 38度線에서의 分割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韓國의 分斷 이후에도 美國의 初期對韓政策은 定型되지 않았고 따라서 서울의 美軍政과 워싱턴의 政策樹立者 사이에 協調가 결여되어 이것이 韓國의 混亂과 不協和音의 지속적인 源泉이 되었고 더 나아가 韓國의 統一을 阻害한 要因이 되었다.

둘째 특히 分斷의 固定化에 이르기까지는 蘇聯의 責任을 묻지 않을 수 없다. 蘇聯은 韓國에 統一된 民主政府를 수립하는 데 협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했다. 따라서 韓國의 統一与否의 關鍵은 주로 蘇聯 政府가 쥐고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에 또 하나의 衛星國을 수립하여 韓國을 支配하려고 하는 蘇聯의 對韓政策이 韓半島의 分斷의 固定化에 결정적인 要因이었다.

蘇聯의 이러한 態度는 결국 大戰중의 美·蘇 協力體制가 戰後에 깨어지고 오히려 冷戰的 兩極體制化한 國際情勢를 반영한 것이다. 이 점에서 특히 1947年 3月에서 9月은 가장 중요한 時期였다.

이 時期의 「프르먼」 독트린 「마셜」 프렌으로 연결되는 美國의 封鎖政策과 「즈다노프」路線으로 나타난 蘇聯의 偏左政策의 對決은 韓國問題를 全面的인 僵局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國際情勢아래 美國으로부터 「hot Potato」^{註 106)} 를 물

註 106) 註 11), p. 41

러 받은 유엔은 그러한 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사실상 韓國問題가 유엔에 移管되면서 韓國에 두개의 政府가 공식적으로 출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결국 韓國民衆의 意思와는 관계 없이 強大國 權力政治의 結果로 한 國家內에 두 政府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모든 責任을 國際情勢에만 轉嫁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南北의 韓國人도 固定化된 分斷에 대한 部分的 責任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解放 直後의 期間에 더욱 妥當性을 갖는다. 이 時期에는 美, 蘇의 反目과 不和가 아직 冷戰體制化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韓半島에 있어서 雙方의 既得權이 아직 形成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韓國人이 團結했더라면 그만큼 自主的 行動의 幅이 넓었을 것이며 따라서 최소한 理論적으로는 分斷의 固定化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假定이 가능한 것이다.

分斷의 固定化에 대한 韓國人의 責任을 究明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北韓의 「民主基地」路線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路線에 의해 北韓은 이미 1945年 後半期부터 北韓의 소비에트化와 单独政權 樹立의 方向으로 나갔던 것이다.

第七節 韓國戰爭 勃發以前까지

南北韓政府의 統一努力

1948年 8月과 9月 南韓과 北韓에 자기 相異한 体制의 政府가 樹立됨으로써 韓半島의 分斷이 固定化된 이후로도 雙方은 이 分斷의 現實을 조금도 認定하지 않고 統一의 實現—그것도 即刻實現이라는 理想에 執着하였다. 이것은 日帝 36年間の 浴下에서 오직 祖國의 光復과 獨立을 추진해 온 韓國民族主義의 당연한 論理의 歸結이기도 했다. 『統一된 祖國을 건설하려다가 38線을 배고 쓸어칠지언정 一身의 富貴한 安逸을 취하여 單獨政府를 세우지 않겠다』는 金九의 聲明에는 分斷의 固定化에 직면한 祖國의 現實에 悲壯히 挑戰하는 韓國民族主義의 高貴한 理想이 담겨 있다.

이러한 統一에의 執念은 비록 冷戰의 意味를 제일 먼저 정확히 포착, 單改單選에의 政治的 賭博을 감행했던 現實主義者 李承晚에게도 마찬가지였다. 理想主義者에게나 現實主義者에게나 모두 『우리 의 所願은 統一, 꿈에도 所願은 統一』이었던 것이다.

統一을 絶對視하고 하루 빨리 統一을 성취해야 한다는 조급성은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에게 「韓國의 革命」은 아직 증식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韓半島 全體의 共產革命은 「人民解放戰爭」의 形態를 취해서라도 달성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여기에 共產革命이라는 目的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다는 鬪爭原則이 이들의 政策手段을 暴力化, 결국 6.25 動亂이라는 참혹한 同族相殘도 서슴치 않은 反民族의 罪惡을 犯하

게 한 것이다.

이처럼 南北韓의 政治指導者들은 모두 韓民族은 祖國의 分斷 아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따라서 祖國分斷의 조속한 終熄—即 統一만이 韓民族의 유일한 活路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이 「民族的 偉業」의 達成을 위해서는 武力行使도 不辭한다는 信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韓國의 分斷이 獨逸의 分斷과 달리 「不安定型」化한 기본적 差異가 발견된다. 獨逸은 비록 西獨獨이 唯一 代表權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基本法(이른바 Bonn 憲法)에서 이미 西獨의 統治範圍를 全獨이 아닌 西獨에게 限定시켰고 東獨은 애초부터 2 國國家說을 취했기 때문에 「安定型」의 分斷을 유지하였다. 이것이 後日 東西獨으로 하여금 當事者끼리 基本條約의 締結을 통해 分斷과 統一의 問題를 平和共存의 論理로 解決하는 바탕을 마련했던 것이다. 註107)

그러나 韓國의 경우에는 南北韓이 모두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라고 주장, 大韓民國은 그 憲法에서 北韓을 포함한 韓半島 全體를 領土로 규정하고 北韓을 反國家團體가 不法 占拠하고 있는 失地로 간주하여 이 失地의 回復을 바로 統一과 同一視하였으며 註108), 北韓도 그 憲法에서 서울을 「統一朝鮮」의 首都로 규정하여 「南半

註107) 註23), pp.21~35.

108) 1948年 7月17日 公布된 大韓民國憲法 第4條는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고 규정했었다. 以後 改正된 憲法에서도 같다.

部 解放」을 統一과 同一視하였다(註 109)。 바꿔 말하여 南北韓은 서로 自己側의 體制와 統治를 相對側에 확장한다는一측 相對側의 崩壞 내지는 消滅이라는一條件下에서만 統一을 이루려고 하였다. 여기에 韓國의 分斷이 「內爭型」化하고 「不安定型」化로 自己 展開하는 局面을 맞게 된다.

1. 大韓民國 政府의 統一努力.

위에서 지적한 大韓民國 政府의 統一에 대한 基本姿勢는 政府의 公式政策宣言에서 分明해진다. 政府는 8月15日 獨立을 內外에 宣布하고 大韓民國 成立過程에 있어 國土統一에 관하여 國會가 취한 立場과 諸措置를 대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立場을 밝혔다. 첫째, 大韓民國 政府는 그 憲法에 규정된 바 韓半島 全体에 대한 主權을 가진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內外에 申明하고 國際的 承認을 獲得함으로써 그 地位를 確立하고자 하였고, 둘째, 國土統一에 관하여는 選舉가 보류된 北韓에서 하루 빨리 民主的 選舉를 실시하여 國會에 남겨 놓은 100席의 議席을 채울 수 있는 方途가 장구되기를 促求하는 동시에, 셋째 北韓取復은 北韓同胞들의 자발적 意思에 의해 성취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自由意思가 계속적으로 共產主義者들에 의해 抑壓받을 경우에는 大韓民國은 武力으로서라도 北韓에 대한 主權을 回復할 權限이 있음을 강조했다. (註110)

註 109) 北韓憲法 第 103 條 參照.

110) 大韓民國 外務部 外交研究院, 韓國外交의 20年, (서울, 1967, p.23.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우선 政府가 統一을 위한 北韓과의 協商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위에도 李承晚大統領을 비롯한 政府의 여러 要人들의 發言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그 代表的인 例로 李大統領은 1949年 2月 18日 韓國統一問題에 관한 政府의 立場을 밝히는 聲明書에서 統一을 위한 어떠한 試圖도 『大韓民國 政府의 存立 目的下에서만 許容될 수 있는 것이며, 北韓 傀儡政權과의 協商은 共產政權의 默示의인 承認을 뜻하는 것이니 如斯한 모욕적인 協商은 결코 있을 수 없다』^{註111)}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政府는 이 期間에 北韓이 제의한 어떠한 形態의 南北協商도 거절하였다.

그대신 李大統領은 武力統一을 주장하였다. 美國이 결코 韓國의 武力統一을 許容하지 않겠다는 分명한 政策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自体防衛뿐만 아니라 北進을 위한 攻擊用 武器援助를 강경히 要求했다.^{註112)} 물론 李大統領의 武力統一論은 南北協南과 美軍撤収를 주장하는 漸增하는 그의 國內 反對勢力을 牽制하기 위한 象徵操作的 統治技術的 側面을 包含하고 있다.^{註113)} 그러나 그의 公開的인 武力統一論은 國際的으로 그를 「戰爭挑者」로 경원시 하게 되었고 北韓으로 하여금 韓國戰爭은 南韓이 挑發한 것이라는 虛偽宣傳의 根拠를

註111) Ibid., p.24.

112) 예컨대, New York Times, March 2, 1950; 朝鮮日報, 1950年 3月3日.

113) 예컨대, 国会内の 少壯派議員 70余名은 1949年 2月初에 南北平和統一을 실천할 수 있도록 外軍의 即時撤収를 요청하는 決議案을 유엔韓國委員會에 제출하자고 緊急同意했다. 朝鮮日報, 1949年 2月4日.

마련해 주었다. 註114)

第3次 유엔總회가 1948年 12月 12日 韓國政府를 승인하고 동시에 國際聯合韓國委員團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 UNCOCK)을 설치하여 國際聯合韓國臨時委員團이 수행해 오던 任務를 계승하게 할 것과 韓國에 있어서 外軍撤収를 결정한 것은 이미 部分的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韓國政府는 南北協商을 배격하면서 統一方案으로 유엔韓國委員團의 監視下의 北韓選舉와 이에 의해 선출된 北韓地域代表의 大韓民國 国会에의 編入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政府는 1949年初에 유엔韓國委員團과 統一問題에 관한 協議를 함에 있어 同委員團의 北韓과의 接觸問題에 대해 同委員團이 蘇聯을 통해 交涉하는 것은 용인하나 北韓의 「傀儡政權 또는 그 代表들」과 직접 接觸하고자 하는 態度에 대해서는 協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林炳稷 外務長官은 1949年 3月 3日 字 公翰으로 同委員團 議長에게 蘇聯으로 하여금 北韓의 「傀儡政權」과 그 政黨 社會團體를 解体하고 北韓内の 政治犯을 석방하고 南北間의 往來를 보장케 함으로써 大韓民國이 南韓에서 실시한 1948年 選舉와 같은 自由분위기에서 北韓에서도 同委員團의 監視下에 選舉를 실시할 수 있도록 說得해 줄 것을 要請했다. 註115)

政府의 유엔을 통한 統一의 努力은 1949年 9月 第4次 유엔

註114) 에컨대, 事實は 語る : 韓國戰爭挑発の内幕 (平壤 : 外國文出版社).

115) 註110), pp. 24 ~ 25.

總會에서도 계속되었다. 國會가 9月 27日 『유엔總會에서 韓國의 38線을 撤廢함으로써 南北統一에 대한 特別方案을 실시하고 따라서 가급적 유엔韓國委員團이 계속 駐在하기를 希望한다』는 「韓國統一에 관한 메시지」를 採択, 유엔에 發送한데 이어 政府는 代表團을 파견, 統一이 蘇聯으로 하여금 北韓에서 自由選舉를 실시하도록 유엔決議의 義務를 강요할 수 있는 유엔에 의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때 大韓民國의 유엔 加入을 승인할 것을 要請했으나 蘇聯의 拒否權行使로 좌절되었다. 註116)

2. 北韓의 統一政策

北韓이 蘇聯의 적극적인 庇護아래 實力 培養面에서 南韓을 앞질렀고 또한 南北간의 힘의 對決을 내다 보고 立論되었던 「民主基地」건설에서 先制의 利를 確保해 놓았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여기에서 北韓은 유엔의 干涉排除와 外軍의 撤収이후 「朝選問題의 朝鮮人에 의한 自体解決」을 표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의 「民族自決原則」은 결국 北韓의 「民主基地」는 그대로 견지하면서 南韓을 유엔과 美國으로부터 完全히 고립시켜 일방적 武裝解除를 強要한 뒤 「人民解放戰爭」의 이름으로 南韓에 대한 武力侵攻을 감행, 共產統治를 擴大하겠다는 「트로이의 木馬」였던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民族自決主義」의 이름 아래 제시한 南北協商은 바로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方式인 「내 것은 協商할 수 없고 네 것만을 協商하자」는 一方通行的인 것이었다. 이 점은 北

註115) 註110), pp.24~25.

韓의 副首相兼 外相 朴憲永의 論文(1950年 3月)에서도 뚜렷해진다. 朴은 統一을 위한 2段階 鬭爭을 내세우면서 1段階로 北韓에서의 「民主基地」 建設과 그 鞏固化를, 2段階로 南韓에서의 大衆에 대한 政治工作과 武力鬭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註117)

사실 北韓은 이 時期에 武力南侵을 위한 準備에 박차를 가한다. 金日成은 1949年 3月 모스크바를 방문, 兩國간의 經濟·文化協力協定을 체결했는데 이때 蘇聯의 通信들은 北韓이 앞으로 「모든面에서」 蘇聯의 協助를 받을 것임을 다짐했. 註118) 이러한 다짐은 蘇聯이 비밀리에 北韓에 대해 武器援助를 개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蘇聯은 北韓에게 1949년부터 1950年 韓國戰爭 勃發時까지 偵察機 10台, 야크戰鬪機 100台, 爆撃機 70台, T-34型 탱크 및 T-70型 탱크 100台와 重砲를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北韓은 1950年 6월에 地上軍이 13萬 5千名을 넘었으며 南韓과의 接境地帶에는 精銳部隊을 배치하고 있었다. 註119)

이것은 「1775年の 美軍水準」(美軍事專門家の 評)인 南韓의 兵力(正規軍 6萬 5千名, 海岸警備隊 4千名, 警察 4萬 5千名)과 裝備과 크게 對照的인 것이었다. 註120)

『飛行機, 탱크, 戰艦과 現代武器로 무장된 人民軍은 어떤 戰鬪

註117) Pak Hen En (朴憲永), "Heroic Struggle of the People of South Korea for Unity and Independence of the Country," For A Lasting Peace, For A People's Democracy! (Bucharest, Organ of the Cominform), No.12(72), March 14, 1950, p.4.

118) Tewksbury, Source Materials..., p.127.

119) 註16), Chapter II.

任務도 효과적으로 完遂할 수 있고…… 祖國의 統一과 獨立의 敵을 분쇄하기 위해 언제나 戰鬪한 態勢가 되어 있다』는 國防相 崔鎬健의 豪言(1950年 1月26日)은 바로 이러한 事情을 반영한 것이었다. 註 121)

北韓은 이처럼 戰爭體制를 굳히는 한편 南韓에 殘留해 있는 共產主義者들을 선동, 「武裝鬪爭」을 전개시켜 大韓民國을 內部로 부터 崩壞시키려고 하였다. 濟州島, 麗水, 順天, 大邱等地에서의 叛亂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南韓으로부터의 美軍撤収(1948年 9月 15日 始作, 1949年 6月29日 完了)와 中共의 大陸制覇 및 韓國을 美國의 防衛線에서 제외시킨 「에치슨」(Dean Acheson) 美國務長官의 公式宣言(1950年 1月12日) 및 南韓 政界에 있어서 南北協商派의 抬頭등은 北韓共產指導者들의 南侵 野慾을 크게 鼓舞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狀況에서 1949年 6月 南勞黨과 北勞黨은 朝鮮勞動黨으로 統合하고 南民戰과 北民戰은 이른바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祖統)으로 統合한 뒤 하나의 統整된 對南戰略下에 平和攻勢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祖統의 行動綱領은 美軍의 즉각 撤収 및 유엔 韓國委員

註 120) U.S. Department of the Army,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 MAG in Peace and War,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Prepared by Major Robert K. Sawyer and edited by Walter G. Harms (Washington, D.C. : U.S. G. P. O., 1962), p. 69.

121) F.B.I.S., Daily Report, Jan. 31, 1950, Far Eastern Section, Articles and Speeches, pp. 11 ~ 13.

團의 축출, 統一을 성취하기 위한 全人民의 動員, 南韓에서의 人民委員
委員會 設立과 合法化를 包含한 社會主義 改革을 위한 鬭爭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祖統의 여러가지 「平和」統一方案은 결국
南韓의 共產化를 궁극적 目標로 하고 있었다. 註122)

우선 祖統은 1949年 7月5日 南韓의 政黨 및 社會團體에 대
해 1949年 9月15日 南北의 「民主的」 政黨과 社會團體의 代表
委員會 主管 아래 南北總選舉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고 註123)

祖統 中央委員會는 1950年 6月7日 다시 南北統一 最高立法機關을
설치하도록 8月4日과 8日 사이에 總選舉를 실시하여 8月15日
에 最高立法會議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南北 政黨 社會團體, 代表
會議를 6月15日과 17日 사이에 海州 또는 開城에서 開催할 것
을 제의했다. 註124)

어에 이어 6月19日 北韓의 最高人民會議는
大韓民國 國會에 대해 統一을 위한 方法으로 南北韓 國會를 합병
單一立法機關으로 「聯合」할 것을 제의했다. 註125) 이러한 일련의
提議에서 北韓은 南韓 政府의 要人들을 新政府에서 除外할 것 등
大韓民國 政府의 事實상의 解体를 요구하여 그들의 底意를 드러
냈다. 더우기 이러한 提議들이 南侵을 위장하기 위한 術策이었음
은 곧 닥쳐온 北韓의 對南侵略戰爭에서 명백해졌다.

註122) Izvestia, July 1, 1949 in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I, No.27 (Aug. 2, 1949),
pp,22~23.

123) New Times (Moscow), No.29 (July 13, 1949), p.18.

124) F.B.I.S., Daily Report, June 13, 1950, pp. 16 ~ 22.

125) Ibid, June 20, 1950, Korea, CGC 1-3.

바꿔 말하며 共產側 提議의 底意는 戰爭勃發을 豫見하면서 그들이 平和統一을 爲래 最善을 다했다는 印象을 주고 韓國戰爭의 責任을 南韓에 轉嫁시키려는 事前 布石이었던 것이다.

第八節 韓國動亂과 그 意味：兩極體制形成의 完成

1. 韓國動亂 勃發의 體制論的 分析

第二次大戰 以後 大戰中の 美·蘇協力 體制가 瓦解되고 替
차로 美·蘇가 중심이 되는 支配的 國際政治體制인 美·蘇
兩極化體制가 國際的으로 形立되었으며 이에 따라 韓國과 같은
國際政治의 周辺地域에도 일종의 從屬的 體制로서 南北對決의
兩極化的 小國際政治體制가 形立되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
다. 體制決定論的 立場에서 보면 이러한 國際政治體制가 유지
되려면 그 體制의 行爲者들(Actors)은 그 體制의 基本行動律에
따라 적절한 役割과 機能을 해야 한다고 한다.^{註126)} 그런데 앞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南北韓은 兩極化的 小國際體制—즉 두
개의 韓國을 결코 受諾하지 않고 現狀(Status Quo)을 打破하여
自己에게 유리한 새 體制를 이룩하려 하였다. 이 現狀打破를 위
한 武力戰의 「準備」에서 完全히 南韓을 압도했던 北韓이 南韓을
征服하려 했던 것이 바로 同族相殘의 韓國動亂이었다.

한 研究에 의하면, 이러한 境遇에는 韓國을 중심으로 한 兩極化
的 從屬體制의 現狀을 유지하려는 上位의 支配的 體制의 主行爲者
—즉 美·蘇의 努力이 緊要하다.^{註127)} 그러나 美國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韓國駐屯軍을 完全 撤収시켰을 뿐만 아니라 「애치슨」

註126)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57), pp. 21~
53; 李昊宰, 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李承晚外交와 韓國
(서울: 法文社, 1969), 第三編.

127) Ibid.

宣言을 통하여 南韓이 美國의 防衛線에서 除外되었음을 명백히 하여 從屬體制의 現狀을 유지시켜야 할 意思와 能力을 完全히 포기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만일 美國이 소규모의 兵力이라도 駐屯시키고 南韓保護의 確切한 宣言을 했거나 南韓을 원조하여 南北韓의 勢力均衡을 취해주었다면 北韓의 南侵可能性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推理가 可能할 수 있다). 한편 蘇聯은 實際로 北韓의 武力統一案에 同調 支援하여 韓半島에 있어서의 從屬體制는 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이 北韓의 南韓에 대한 武力侵攻을 「명백한 侵略行為」로 단정, 韓國戰에 介入하고 다시 中共軍이 敗退하는 北韓軍을 도와 韓國戰에 뛰어들자 韓國戰爭은 局地戰일망정 곧 國際化했다. 南北韓 어느 쪽도 勝者가 될 수 없었고 列強은 다시 「戰爭以前의 現狀」(Status quo Ante Bellum)」 復旧로 韓國戰爭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1953年 7月 27日 板門店休戰協定이 成立된다.

美國이 南韓의 安全保障을 韓美相互防衛軍事案約을 통해 약속한 것은 바로 이 休戰 以後이다. 바꿔 말하여 美國은 韓國戰爭 以後에야 休戰線을 중심으로 성립된 韓國의 兩極化體制를 유지하는 役割을 맡게 된 것이다. 蘇聯 역시 1953年 3月 스탈린의 死後 등장한 새 指導層의 平和共存政策에 따라 北韓의 對南戰略을 抑制 緩和시켜 韓半島에서의 局地的인 小兩極化體制가 完成된다. 註128) 이것은 결국 韓半島 分斷의 固定化를 意味한 것이다.

韓國戰爭은 특히 韓民族의 가슴 속에 不信과 憎惡을 深化시켰다.

註 128) Ibid, p. 323.

특히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은 金日成集團의 어떠한 「平和」攻勢도 하나의 欺瞞이며 武装解除의 麻醉劑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韓國戰爭은 統一問題가 平和의 手段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致命打였던 것이다.

2. 韓國動亂의 責任

여기서 우리는 共產主義者들이 왜 韓國動亂을 挑發하였는가를 간단히 再論할 필요를 느낀다. 우선 蘇聯이 北大西洋同盟機構의 創設등 유럽에서 加重되는 西歐의 壓力을 極東으로 轉換시키려는 努力으로 韓國戰을 誘發했다는 說이 있다. 둘째 蘇聯이 日本과 单独平和條約을 체결하려는 美國의 一方的 行動을 견제하기 위해 韓國戰을 誘發했다는 이른바 蘇聯極東戰略說이 있다. 註 129) 이 說은 中共의 大陸制霸와 더불어 美國이 対日政策을 전환하여 自衛隊 창설과 重工業의 育成을 통해 日本 國力を 강화하는 한편 蘇聯을 무시하고 対日講和條約을 추진하자. 蘇聯은 이를 美國이 日本에 反共國家를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北大西洋同盟機構같은 防

註 129) John W. Spanier, *The Truman Mac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 (New York: W.W. Norton, 1965), pp. 15~40; David J. Dallin, *Soviet Foreign Policy After Stalin*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 1961), pp. 60~61; Gabriel Phillips, *The Truman Presidency, the History of a Triumphant Succession* (New York: Macmillan Co., 1966), p. 328; and Marshall D. Schulman, *Stalin's Foreign Policy Reappraised* (New York: Atheneum, 1966), pp. 142~143.

衛機構를 形成하려는 試圖로 해석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蘇聯은 손쉬운 勝利가 예견되는 韓國戰爭을 도발함으로써 아시아 共產主義의 安全을 確保하고 日本에서의 美國地位를 弱화시키려고 試圖했다고 본다. 註 130) 세계 蘇聯이 그의 武力攻擊에 대한 西方陣營의 反應을 탐색하기 위해 北韓으로 하여금 南侵케 했다는 「抵抗實驗說」이 있다.

그러나 韓國戰爭의 構想은 北韓의 共產指導者들이 시작했을 可能性이 크다. 南韓의 經濟, 軍事力은 그들의 眼目에서 볼 때 보잘 것 없는 것이었고 특히 1950年 5月 30日 總選에 나타난 바와 같이 李承晚의 支持勢力은 크게 弱化한 대신 南北協商派를 비롯한 中間派가 抬頭한 政治的 變化가 그들의 情勢判斷에 충분히 계산되었을 것이다. 특히 일단 侵攻이 개시되면 南韓의 개량파들과 南勞黨系 共產主義者들이 內應하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게다가 中共의 大總制霸를 방관한 美國의 아시아 不介入政策과 前記한 「에치슨」 宣言은 北韓 共產指導者들에게 南侵의 그런 라이프를 보였을 것이다.

「스탈린」은 北韓의 共產指導者들의 이러한 計劃에 반대할 아무런 理由가 없었을 것이다. 戰場은 蘇聯이던 韓國이던, 勝利에 대한 밝은 展望은 蘇聯이 잃을 것 보다 얻을 것이 많으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후르시조프」의 回顧錄의 正確性(Authenticity)

註 130)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Macmillan Co., 1960), pp. 34~36.

만 인정된다면, 우리는 金日成이 1949年末과 1950年初에 「스탈린」에게 「韓國戰爭의 必要성과 勝利를 說得시켰고 「스탈린」이 金의 計劃을 승인했다는 「후르시체프」의 証言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註 131)

3. 韓半島の 國際責任地域化

여기서 우리는 韓國動亂의 進展狀況을 記述할 必要는 없다.

다만 우리의 關心은 韓國動亂을 契機로 韓國이 國際責任地域化하는 過程의 考察에 제한될 것이다.

1950年 6月 25日 韓國動亂이 勃發하자 美國은 아직까지의 過小 介入政策에서 一變, 韓國에 對한 積極적 介入으로 나서게 되었다.

註 132) 따라서 美國의 主導下에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는 6月 25日 다음과 같은 共產侵略行爲 停止要請에 對한 決議를 9對0 (棄權1

註 131) Khrushcher Remembers, with an introduction, commentary and notes by Edward Crankshaw : translated and edited by Strove Talott (Boston : Little, Brown & Co., 1970), pp. 367 ~ 68.

이밖에 韓國戰爭이 南韓에 의해 開始된 것이라는 見解도 있다. Karunakar Gupta, "How Did the Korean War Begin?" China Quarterly, No. 52 (Oct.-Dec., 1972), pp. 699 ~ 716. 이 論文이 韓國開戰說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証拠로 開戰과 동시에 韓國軍이 응진만을 一時占據한 事實을 들고 있다. 이밖에 Isidore F. Stone, The Hidden Story of the Korean War (New York: Monthly Review, 1952), pp. 1 ~ 107; D. Frank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1917 ~ 1960 (2 vols : New York: Doubleday & Co. 1961), II, pp. 592 ~ 601.

(유고슬라비아) 欠席(蘇聯)으로써 採択했다. 즉 (1)安保理는 北韓으로 부터의 大韓民國에 대한 武力攻撃이 平和의 破壞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 敵對行為의 即刻 中止와 北韓軍隊를 北韓 38 度線 以北으로 즉시 撤退하도록 北韓當局에 要請한다. (2)加盟국은 이 決議의 實시에 있어서 유엔에 모든 援助를 제공할 것이며 北韓 官憲에 대해서는 援助提供을 삼가할 것을 要請한다. 註 133)

安保理는 다시 6月 27日 유엔加盟국이 北韓의 武力攻撃을 擊退하고 韓國地域의 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데 필요한 援助를 大韓民國에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決議를 採択했다. 그리고 7月 7日에는 國際聯合軍總司令部設置에 관한 決議를 採択했으며 註 134), 10月 7日 總會에서는 유엔韓國統一復興委員團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을 설치 유엔韓國委員團과 代置키로 決議했다. 언커크는 특히 '主權國인 韓國 內에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政府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必要한 措置를 취할 機能을 부여받았다. 註 135) 이로써 韓國問題에 대한 유엔의 介入의 法的 節次는 完了되었다.

註 132) 美國이 이처럼 韓國戰에 신속히 개입한 理由는 北韓侵略을 蘇聯의 世界制霸試圖의 開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Lloyd E. Gardner et als., The Origins of the Cold War (London: Ginn-Blaisdell, 1970), pp. 97~98.

133)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Washington, D.C.: U.S.G.P.O., 1960), pp. 92~93.

134)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uly 17, 1950, p. 83.

135) 註 133), pp. 105~107.

그러나 美軍이 主軸이 된 유엔軍의 反擊으로 北韓軍의 奇襲이
 눈 앞에 닥쳤을 때, 中共은 「中國人民志願軍」을 韓國戰에 投入,
 兩北韓의 軍事的 勢力均衡을 回復시켜 大韓民國에 의한 韓半島 統
 一을 저지시켰다. 註136) 결국 美國과 蘇聯 가운데 어느 한쪽이
 결정적 敗北를 인정하거나 그들간에 어떤 妥協이 성립하지 않는
 한 韓半島에서의 兩極化體制는 從屬體制의 行爲者들(즉 南北韓)에
 의해 변경될 수 없었던 것이다. 註137) 여기에서 休戰이 왔고, 美
 國의 對韓防衛公約(韓美相互軍事防衛條約)에 따라 이 地域에 있어
 서 兩極體制는 完成된 것이다.

4. 休戰 以後 兩北韓의 統一接近

여기서 우리는 休戰 以後 兩北韓의 統一에 대한 接近을 모두
 다루지(Exhaustive) 않고, 다만 그 本質의 內容을 요약하고자
 한다.

休戰協定은 確實히 韓國에 있어서 分斷의 安全性을 높였다.

1960年代 後半期 以後 北韓의 好轉性에 起因, 그 安全性이 때때로
 威脅되기는 하였으나 兩北韓은 대체로 分斷을 「安定型」化 하였다.

分斷의 安定化라는 것은 결국 分斷된 雙方이 國家政策의 優先을
 추구적인 統一의 實現에 두지 않고 自己의 國內秩序의 安定化에 두
 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北韓에 있어서는 休戰 直後부터, 兩

註136) 中共軍의 參戰過程 및 動機分析에 대해서는 註130) 參照.

137) 註1) 參照.

韓에 있어서는 第三共和國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經濟建設을 통한 民主基地의 鞏固化가 祖國統一의 유일한 担保」라는 北韓의 口號나, 「實力 培養을 통한 統一」이나 「우리의 國력이 北녁으로 넘칠 때의 統一」이라는 大韓民國의 口號는 바로 先國內 體制安定化 後統一試圖의 政策을 뜻하는 것이었다. 註 138)

이처럼 南北韓 雙方이 특히 休戰成立 이후 20年 가까이 國內 體制의 安定을 위한 独自の 政策을 추구, 각각 別個의 生存可能性 存在 (Viable entity)로 發展되어 왔다는 것은 결국 두 體制 사이의 補完性이 크게 弱화되었음을 意味한다. 이제는 「以南 善, 以北 電氣」의 補完爲主的 슬로건은 前世代보다 낮은 呼訴力을 갖고 있는 것이다. 註 139) 이것은 아마 南北韓 關係의 未來를 定型하는 새로운 基盤이 될 것이다.

註 138) Hak-Joon Kim, "Korean Unification in the Asian Balance of Power,"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1972. Chapters VI, VIII.

139) David C. Cole and Princeton N. Lyman, Korean Development: The Interplay of Politics and Econom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 81~82.

結 論

民族의 統一은 우리에게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歷史的 課題인
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同族相殘이라는 값비싼
代價를 支払하면서까지 이뤄야 할 至上命命은 아니다. 여기에 統
一을 위한 一世代犧牲論이 거부되어야 할 理由가 있다.

따라서 南北韓關係는 어디까지나 平和에 의해 規制되지 않으면
안된다. 平和에 의한 規制라는 것은 결국 固定化한 分斷의 現實
의 認定에서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分斷의 公式化에서 平和的인
方法에 의해 民族의 大團圓을 이룩한다는 것은 역시 韓國民族主義
의 무거운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여기 李漢基教授의 무게 있는 論評을 引用, 本稿를 끝맺고자 한
다.

『筆者(李漢基)는 韓國民族主義의 최대의 과제들 分斷을
극복하는 民族國家로서의 완결에 둔다. 強大國政治가
未鮮決의 章으로 남겨놓은 分斷을 이 民族이 해결치
못한다면 장차 韓國民族主義가 어떤 아름다운 內容物들
을 담아 이것을 美化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 없
는 마굿간」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西歐에서는 民
族主義가 어느 정도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이제
그 극복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世界의 場에서 움직이
고 있는 平和와 自由와 平等이 韓國이라는 場에서 그

완전한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民族國家로서 완결에 도달치
않으면 안된다. 世界史의 單位도 채 되지 못하는
分斷國家더러 民族의 主張을 安保와 經濟的 福利의 필요와
의 關係속에서만 고려하고 내소널리즘은 文明生活을 破壞하
는 질병으로 간주해서 무작정 世界潮流에 뛰어들라고 한다
면 이는 헤엄칠줄 모르는 사람보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는 것과 다를 바 없다.』¹⁴⁰⁾

註 140) 李漢基, “強大國政治와 韓國民族主義,” 新東亞 (1973年
9月), p.97.